

# 새국어생활



# 새국어생활

2015년 제25권 제3호 · 가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5-02-02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5권 제3호(2015년 가을) Vol. 198**

인쇄일·발행일 2015년 9월 30일

펴낸이 송철의

편집위원 남길임 · 이광표 · 주세형 · 진정란 · 최경봉

기획·편집 이승재 · 박주화 · 박선

제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 정기 구독 신청 및 구독 소감, 건의 사항 등 문의

《새국어생활》 담당자 | (02) 2669-9719 | urimal365@korea.kr

## 차례

### **[특집] <국어기본법> 시행 10년, 그 성과와 나아갈 방향**

〈국어기본법〉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박창원	3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의 나아갈 길 박재현	36
국어문화원 제도와 공공 언어 남영신	53
전문용어 정비와 표준화의 실제 방향 -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은희철	76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10년의 회고 강승혜	107

## **지금 이 사람**

지역의 국어 문화를 이끄는 국어문화원 123

– 박용식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기획부장을 만나다

권창섭

## **문학 속 우리말**

이야기와 노래에 나타난 언어유희 139

– 우리말 가지고 놀기

김영희

## **세계의 언어 사전**

122년에 걸쳐 펴낸 그림 형제의 《독일어 사전》 149

최경은

## **국어 산책**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167

김정대

국립국어원 소식 179

[특집]

〈국어기본법〉 시행 10년,  
그 성과와 나아갈 방향





# <국어기본법>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언어와 문자는 인간의 정신적인 생존과 문명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신적인 활동을 위해 언어와 문자를 필요로 한다.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생성하는 데에는 언어와 문자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략 5,000년 전쯤에 우리 민족은 단일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민족이 사용하던 한자를 수용하여 문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자의 구성 성분인 ‘형(形), 음(音), 의(意)’ 중 때로는 전체를 빌려 와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과 ‘의’ 중 한 부분만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모양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면서 문자 생활을 해 왔다. ‘음(音), 위(爲), 시(是)’ 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글자들은 본래의 모양과 음, 뜻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音)’은 그 소리를 취해 음절의 말음 [m]을 나

타내기 위해, ‘위(爲)’는 그 뜻을 취해 ‘ㅎ-’라는 한국어 동사를 표기하기 위해, ‘시(是)’는 그 뜻을 취하되 본래의 뜻을 버리고 음만 빌려 와 주격 조사 ‘-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이들 문자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바꾸어 ‘위(爲), 시(是)’를 ‘ㄱ, ㅅ’ 등으로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 생활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1444년 1월(음력 1443년 12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은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 후 20세기의 교체기에 문자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 끝에 합의점을 만들어 1933년에 <한글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되고 체계적인 문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대체로 5,000년 전에 단일한 언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국가적으로 분단과 통일을 거듭하면서 언어생활에서도 분열과 통합 현상을 복합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어, 몽골어, 서구 언어, 일본어 등 외국어가 지속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강제로 수용되어 우리 언어 속에 수많은 외래어 요소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약 7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의 한 축이 되면서 민족과 언어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 바뀌고 있는 국어 환경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어기본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

는 등 국어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이 글은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이해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진 경위와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국어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되새겨 본다. 제정 경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3장에서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한 성과를 제1차 발전 계획의 성과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함께 논의한다. 4장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앞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마무리를 한다.

## 2. <국어기본법> 제정 경위와 내용 그리고 의의

### 2.1. 제정 경위와 취지

#### 2.1.1. <국어기본법> 이전의 논의

<국어기본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민간이 주도하여 국어에 관한 법을 만들려 했다. 이러한 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국어기본법>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초에 남영신(현 국어단체연합 대표) 선생이 당시 국어정책과 김수연 과장에게 국어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국어정책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영신 선생은 의원 입법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2001년에 당시 국립국어원 원장이었던 남기심 선생과, 한글학회 허용 이사장 등의 협조로 지도 위원과 간사를 두게 되었다. 지도 위원은 ‘남기심

원장 추천 위원'으로 김하수(연세대), 박창원(이화여대), 송철의(서울대), 홍종선(고려대), 한동완(서강대) 등 5명과 '허웅 이사장 추천 위원'으로 배해수(고려대), 김정수(한양대), 유재원(한국외국어대), 조오현(건국대), 최기호(상명대) 등 5명, 그리고 '남영신 대표 추천 위원'으로 김동언(강남대), 박경희(케이비에스), 박종만(까치출판사), 최인호(한겨레신문), 홍영호(변호사) 등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간사 2명을 두게 되는데 국립국어원 측 간사는 정희창 학예 연구사가, 그리고 한글학회 측 간사는 김한빛나리 선생이 맡고 남영신 선생이 총괄했다.

그리하여 남영신 선생과 간사가 몇 차례 모여 <국어진흥법> 초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지도 위원 회의를 거쳐 법의 이름을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법안의 발의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국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은 뒤에 의원을 선정하여 입법을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국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학계의 의견을 두루 수용하는 도중인 2002년 6월에 당시 김수연 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남기심 원장과 허웅 이사장의 동의 아래 <국어진흥법안(가칭)>을 국어정책과장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2002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기본법(초안)>을 만들어 보내왔다. 이를 당시 관련자들이 축조·심의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냈다.

### 2.1.2. <국어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취지

200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식·정보·문화 국가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국어 발전 종합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하여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 예술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어 사용의 진흥에 관한 기본 법령의 부재로 인해 국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과제를 대두시키고, 기존 국어 정책의 점검을 통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므로 국어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정보·문화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국어 발전 종합 계획 시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장기 과제로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국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국어 진흥·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말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만들어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방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4년에 이 초안은 국무 회의를 통과하여 행정부의 안으로 만들어졌다. 2004년에 국회로 이송되어 청문회를 거쳤으며, 200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1월 27일자로 대통령이 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그해 시행령이 만들어져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 2.2. 내용

2005년에 제정되고, 2011년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은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5장 27조로, 제1장은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총칙이다. 제2장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은 국내외에서의 국어 사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 부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기본 이념', 제3조에서는 '국어, 한글, 어문 규범, 국

어 능력'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서술하고,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기술했다. 이에 명시된 목적과 이념은 다음과 같다.

- (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제2장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제8조에서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장은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어문 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 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 내용을 ②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리고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③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는 “공공 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18조에서는 국어 문화의 확산에 관한 문제, 국어 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문제,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19조에서는 한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종학당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그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  
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에서는 한글날과 관련된 내용을, 제21조에서는 “국어의 발전  
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4장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22조에  
는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시행 등에 관해, 제23조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24조에  
는 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어문화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  
고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 국어 정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상  
(제25조), 국어문화원의 위상 확보(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  
한 위임(제27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2.3. 의의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진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존재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은 국어 정책의 수립 계획안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은 계획을 수행하는 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 2.3.1. 존재 그 자체

〈국어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국어기본법〉이 존재한다.’ 그 자체일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 제도 등은 존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어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나 시행착오 등은 〈국어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존재는 〈국어기본법〉의 존재를 위한 참여물이 되는 것이다. 〈국어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할 점도 많지만 〈국어기본법〉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국어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것이다.

### 2.3.2. 장단기 계획의 조화

〈국어기본법〉이전에는 국어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없었다. 국어 정책에 관한 유일한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연간 사업도 당해 연도를 위한 단기 계획뿐이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에서 장기적인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국어 정책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2.3.3. 민관의 협력 강화

〈국어기본법〉에 의한 국어 발전 장기 계획을 국어심의회가 심의할 하게 함으로써 많은 민간인이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의견을 종합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실질적으로 계획의 관리에 중심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게 되었다. 대학의 연구소 등 민간기관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여 이들이 국가의 국어 정책에 관련된 일부의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상설 통로의 역할을 맡게 했다.

### 3. <국어기본법> 10년의 변화

#### 3.1.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국어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실정법으로 명문화해 국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제1차 기본 계획의 수립 과정과 경위, 그 내용에 관해서는 조남호(2007)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2005년은 국어 정책에서 중요한 해이다. 2005년 1월 27일 자료 <국어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7월 27일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국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법 제6조 1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5개년 계획의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그런 만큼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6년 6월 초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였다. 전담 팀에

서는 먼저 <국어기본법>의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여 계획의 성격, 계획에 담은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4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창의 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참고 자료로 검토하였으며, 원내의 6개 팀에서 각 팀이 담당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초안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 양식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 팀을 선정하여 그 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담 팀에서 만든 양식에 따라 각 팀에서 세부 사업별 초안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8월 22일 국립국어원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하였다. 팀별로 수정한 초안을 가지고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각 팀별로 1인이 참석한 워크숍 기간 동안 3인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과 미래상(비전)을 세우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워크숍을 마친 후 워크숍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담 팀에서는 기본 계획 초안을 최종 정리하여 9월 18일 1차로 안을 완성하였다. 이 안에 관해 외부에 자문을 구했다. 자문은 서면 검토와 회의 개최 검토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서면 검토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외부의 전문가 5인에게 의뢰하였다. 이와 별도로 9월 25일 외부의 전문가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외부 자문 결과에 따라 기본 계획 초안을 수정한 후 3회에 걸쳐 국어심의회회의 검토를 거쳤다. 9월 27일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회와 언어 정책 분과 회의에서 1차 검토를 하

였다. 지적 사항이 많아 국어심의회를 더 개최하여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국어심의회 3개 분과별로 5인 이하의 대표단을 선출하여 국어심의회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월 27일 열린 실무 위원회에서 수정된 기본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새롭게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다. 안을 다시 수정하여 11월 21일 국어심의회 실무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다. 최종 심의를 거친 안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12월 29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었다.

그리하여 발전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사회 통합적 언어 복지 시책 확대 시행
- 국제화·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 규범 정립
- 국어 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 지식 정보 문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어 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국어 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

2012년 시작되어 2016년에 끝나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의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세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V.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1-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 2. 공생 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 2-1. 언어적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 3.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 3-1. 공공 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 4-2.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5-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제1차와 제2차를 비교해 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과제와 수행하려는 내용 등이 크게 바뀌어 있는데, 장기 계획의 수립과 실천하려는 의지 그 자체가 국어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제1차 발전 계획의 성과 및 그 후

제1차 국어 발전 종합 계획의 수립으로 국어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  
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제2차 국어 발전 종합 계획에  
정리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2.1. 한국어 세계화

한국어 세계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세종학당의 설립 및 세  
종학당재단의 설립이다. 세종학당은 국립국어원에서 개설하였는데,  
그 설립 목적을 “①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쌍방향의 문화 교류  
와 이해 촉진, ②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대, ③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  
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초기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의 4개국  
에서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몽골의 교육문화과학부, 국립사범  
대학 울란바토르대학, 그리고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 중앙민족  
대학과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하여 2007년 3월에 몽골 울란바  
토르대학과 국립사범대학의 2개교에 세종학당이 개원하게 되었다.  
이어 5월에는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대학들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학,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국립사범대학과도  
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7월에는 중  
국 천진 외국어대학교와의 업무 협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 아주 조그만 규모로 출범한 세종학당은 2012년 9월 기준으로 유럽 10개국에 16학당, 아시아 19개국에 56학당, 북아메리카 3개국에 7학당, 아프리카 4개국에 4학당, 오세아니아 2개국에 2학당, 남아메리카 5개국에 5학당이 분포하여 전 세계 43개국 90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었다. 3년 뒤인 2015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 걸쳐 54개국 140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어의 해외 보급 내지는 한국어의 세계 언어화를 목표로 하는 세종학당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해외 보급과 관련된 일들은 초기에는 민간인들이 힘을 모아 2001년 1월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설립하여 관장하였는데, 2012년 12월에 국가의 특별 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면서 해외 보급에 관한 일은 이 기구가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 기구는 한국어 세계화와 관련된 일, 특히 세종학당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의 수행 업무는 그 누리집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 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어의 세계화 내지는 세계에서 한국어 진흥과 관련된 일은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진흥과'를 설치하여 연구와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한국어 해외 보급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은 국민 세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 3.2.2. 공공 언어 개선

제1차 발전 계획의 성과로는 공공 언어의 개선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적들이 나열되고 있다.

-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특별반 운영(연 2회)
- 행정 용어 순화 시스템 자료 제공(빠른 교정, 선택 변환 시스템)
- 공무원 국어 사용 지침서, 차별적 표현 개선 안내서, 방송 언어 안내 지침, 신문 언어 안내 지침, 통신 언어 교육서 등 발간·배포
- 공공 언어 개선 토론회 개최(연 1회)
- 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조사 및 결과 발표(매월)
- 공공 기관 언어 표현 개선 지원(연평균 66건)
-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 공동 토론회 개최(연 1회)
- 국어책임관 직무 연수 개최(연 1회)
- 교과서 감수 지원(연평균 1,500건)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세청,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업무 협정으로 공공 언어 개선 확대
- 공공 언어 개선 민간단체 지원

이러한 사업에 이어 2014년에는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생활·언어문화를 바르고, 곱고, 품격 있게’ 하고, ‘문화 융성의 토대로서 우리 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 연합’을 결성하여 이 방면에 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3.2.3. 국어 사용 환경 조성

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어문 규범의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2010),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2010), ‘문장 부호 규정 영향 평가’(2010), ‘표준어 영향 평가’(2011) 등 어문 규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준어에 관한 규정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복수 표준어를 상당히 인정하는 것도 바뀐 점 중의 하나가 된다. 예를 들어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등물, 맨날’ 등 11개의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길래, 떡거리, 연신, 메꾸다, 눈꼬리’ 등 25개의 별도 표준어를 지정하고, ‘택견, 품새, 짜장면’ 등 3개의 표기를 인정하였다.

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이 연평균 4만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은 국어 사용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아도 좋을 것이다.

### 3.2.4. 국어사전 편찬 분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편하게 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인터넷판 전환이 될 것이다. 표기법에 관한 문제, 발음에 관한 문제, 표준어 관련 문제 등 국어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말 사용의 편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식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어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의 사전 편찬이 완성되는 시점은 새로운 사전 편찬의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환경에 맞추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담는 수정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언어의 사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문화의 집대성이자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그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크고 더 깊이 있는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덧붙여 둔다.

### 3.2.5. 한글박물관 건립과 세계문자박물관 착수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이루어진 큰 결실 중의 하나가 ‘한글박물관’의 건립이다. 한글박물관의 전신은 2001년 5월에 당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구축한 ‘디지털 한글 박물관’이다. 당시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공간에 한글박물관을 구축했다가, 2010년 5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부지를 확보, 박물관 건물의 건축에 들어갔다. 이후 3년간의 공사로 마침내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로써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자인 한글의 역사와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글박물관 완공 후 2015년에는 ‘세계문자박물관’을 만들기로 하였다.

문자와 관련된 박물관의 건립과 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 역시 <국어기본법> 시행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3.3. 지방 자치 단체의 국어 발전 계획 수립

<국어기본법>의 또 하나의 성과는 이 법이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광역시이다. 부산시에서는 2015년 1월에 ‘부산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는 민선 6기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성을 높이고 ‘바르고, 곱고, 품격 있는’ 시민들의 언어생활을 통해 문화용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은 한글과 한국어가 ‘문화용성’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 △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 소통성 제고, △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사용 불편 최소화, △ 부산 지역어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부산 지역어 진흥, △ 언어문화 개선 운동으로 국어 위상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시민 및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 공무원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강좌 개설·운영, △ 시민 국어 교육 강좌 개설·운영, △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 유도를 추진한다.

공공 언어 개선을 통한 시민 소통성 제고를 위해서는 △ 구·군 국어 책임관 활성화, △ 공공 언어 사용 실태 전수 조사, △ 공공 언어

순화 실시, △ 알기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 운동 전개를 실시한다.

또 언어적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사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등 소외 계층 언어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 및 학습 기반을 구축하며, 비문해 어르신 등의 교육을 강화한다.

부산 지역어 진흥을 위해서는 △ 부산 지역어 전수 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 △ 부산 지역어 경연 대회 개최 및 지원, △ 부산 지역어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 바른 말·고운 말 쓰기 범시민 운동 전개, △ 옥외 광고물 국어 사용 정착, △ 개인 사업자 및 민간 기업의 국어 사용 정착 및 유도를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토대로 바르고 쉬운 국어의 사용으로 시민 간의 ‘통합’(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전문가와 비전문가, 구세대와 신세대 등), 부산시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어렵고 낯선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을 쉽게 쓰기)이 원활하게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산 말(사투리)을 보존해 후손에게 계승하고 부산 말(사투리)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등 국어 문화 발전으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208&command=View&idx=60941&schField=title&pageIndex=5>)

## 4. <국어기본법>의 개선 방향

<국어기본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표현 등에 관한 내적인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법을 다룰 주체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향이고, 다음은 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빠져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표현에 관한 사항은 문장 자체와 조문끼리 충돌하는 문제이다.

둘째 문제, 즉 환경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지만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 4.1. 내용의 정비

#### 4.1.1. 임의로운 선택과 강제적 필수

<국어기본법>의 많은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수행에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그냥 두어야 할 사항과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적당한 경계선은 무엇일까,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고쳐야 할 사항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4.1.2. 새로운 내용의 추가

제정 당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나 관련 당사자의 민원성 반대로 인해 <국어기본법>에서 빠져 버린 부분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다시 검토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의 하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초안의 16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제16조(국어 능력 요구 대상자) ① 아래의 사람은 제13조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소정 수준의 능  
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1.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사와 대학 교수
2.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서 보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3.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 고정적으로 기고하거나 출연하는 사람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은 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반대로 제정 당시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국어와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된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자는 간단하게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4.2. 표현의 정비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어 문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곳이 더러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2.1. 내용의 충돌 문제

제6조에서 기술된 아래 (1)의 내용과 제13조 ②항에서 기술된 아래 (2)의 내용은 서로 충돌한다.

(1)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에 의하면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의 하위 범주가 되는데, (2)에 의하면 두 내용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 4.2.2. 나열어의 동질성 문제

제6조 3항에 나오는 다음의 표현도 다듬어야 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 구에서 ‘국민의’는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공유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이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단위의 관계가 매우 부적절하다. 대등한 관계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국어 능력의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정도로 수정하거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2.3. 기본법과 시행령의 유기성 문제

기본법에 의하면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러나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 ①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에 대한 사항

##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에 의하면 기본법의 1항에 의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기본법의 2항에 의해 어문규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므로, 남은 3항에 의해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4.2.4. 모순적인 표현 문제

시행령 제4조(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 ③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제정’이 ‘처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규범’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조항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4.3. 환경의 정비

#### 4.3.1. 담당 부서의 조정

〈국어기본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 전체 부서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관장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일, 이민자에 관한 일, 외국 노동자에 관한 일 등도 국어 정책에 관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서로 성격이 다른 일들을 한 부서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일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여 관련 부서에서 분업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이 국어 정책이란 면에서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필요할 것이다. 부서의 신설 혹은 업무의 협약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일이다.

#### 4.3.2.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셈이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이후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해당 분야에

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결과물의 효용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물의 활용성이나 효용성을 검증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 5. 마무리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종속된다. 인간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는 존재하는 한 그 사용자를 지배하기도 한다. 어떤 인간이든 사회적 약속으로서 언어를 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개념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와 사회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이 거의 존재할 수 없다.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는 언어에 의존적이다. 하지만 한 언어 공동체가 그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언어는 언어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에 종속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와 민족의 흥망성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가다듬고 발전시키면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는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그 민족 자체가 망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만주족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청나라의 초기 강희제는 국가 초석을 세우는 여러 정책을 펴고, 언어와 문자도 정리한다(《강희자전》). 그런데 이 언어와 문자 정리 사업은 한족이 사용하던 한자에 국한되었고, 만

주족이 사용하던 언어와 문자에 관한 사업은 전혀 펼쳐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만주족과 만주어는 마침내 소멸되고 말았다. 반대로 영국은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 등 강력한 자국어 발전 정책을 폈고, 이에 힘입어 영어는 세계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21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져 우리말을 다시금 정리하고 보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법의 제정으로 목적인 일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의 제정은 해야 할 기본 사항만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 법 자체가 무엇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항을 수행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완성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국어기본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말에 관한 것이다. 막말이나 욕설은 인간의 정서를 파괴하고, 애매모호한 말은 인간의 지성을 혼란시키고,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믿음을 파괴하고, 무관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인간의 착각을 유도하고, 휘황찬란한 말놀음은 인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좋은 말, 정확한 말, 참말(바른말), 적극적인 의사 표현, 성실한 자유 의지가 반영된 진정성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법으로 제정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층의 막말과 거짓말, 그리고 허무맹랑한 말, 한국 영화나 게임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욕설 등을 제재할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에 관한 것이다. 말이란 인간이 생각한 바나 느낀 바를 청각적인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글이란 동일한 것을 시각적인 기호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란 제각각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는 말의 표기인 글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한자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 제기 역시 한자 표기 문제가 그 원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즉 문자 사용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방법은 없는지도 논리적·학문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강남옥·박재현(2011), 공공 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人文研究》 62, 123~15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재일(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기본법>, 《한글한자문화》 65, 23~2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권재일(2010),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국어국문학》 155, 5~17, 국어국문학회.
- 김명희(2015), 한국의 공공 언어 정책 연구: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권 1호, 91~110, 한국자치행정학회.
- 김재운·노응래·이계진·손봉숙·정종복·박형준·이광철·김재홍·정병국·우상호·이재오·정청래(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의 질의내용, 《한글한자문화》 65, 28~3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김준희(2006),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국어 기본법> 이후 달라진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3, 207~223, 한말연구학회.
- 김진규(2005), <국어기본법>제정의 의의, 《한어문교육》 1, 133~14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남풍현(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제출하는 의견, 《한글한자문화》 65, 17~2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박경희(2004), 특집: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방송인의 입장에서 <국어기본법>제정에 동의한다, 《한글한자문화》 65, 20~2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박용찬(2008), 국어 정책 혁신 방향과 <국어 기본법>-<국어기본법>의 법률로서의 실효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8, 11~35, 한말연구학회.
- 박창원(2010),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이정현

- 국회의원 주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손원일(2004), 한글+한자문화 칼럼: <국어기본법>은 백해무익, 《한글한자문화》 54, 54~5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손원일(2004), 쫓겨간 특집: 위대한 착각: 국어 기본법은 국민 생각의 통제, 《한글한자문화》 60, 34~3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손원일(2005), 한글+한자문화 칼럼: <국어기본법>은 도깨비, 《한글한자문화》 66, 69~7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 양명희(2009), 다문화 시대와 언어 정책, 《한국어 교육》 20권 1호, 111~133,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양명희(2014),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우리말 글》 60, 27~51, 우리말글학회.
- 이관규(2006), 국어기본법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한글》 272, 221~247, 한글학회.
- 이관희(2010), 공공 기관 서식, 문서의 개선을 위한 국어 정책 시행 방향-국어책 임관 제도의 보완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先淸語文》 37 · 38, 209~252,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 정희창(2014), 어문 규범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 글》 60, 53~73, 우리말글학회.
- 조남호(2007), 국어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경위 및 내용, 《새국어생활》 제17권 제2호(2007년 여름), 48~53,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9),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국어기본법>다시 보기, 《한말연구》 24, 241~265, 한말연구학회.
- 조태린(2008),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국어기본법>다시 보기-,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28, 91~105, 한말연구학회.
- 조항록(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 교육-제정의 의의와 시행 이후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권 2호, 401~42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진재교(2006), <국어기본법>과 한문 교육의 방향-언어 내셔널리즘을 넘어-, 《한문교육연구》 27, 361~396, 한국한문교육학회.
- 진태하(2004),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국어기본법>을 반



대해야 하는 이유, 《한글한자문화》 65, 15~1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최대권(2014),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 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55권 4호, 241~2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의 나아갈 길  
—

박재현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 1. 들어가며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이 10년 동안 해 온 일을 회고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행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회고문을 써 본 적이 있었던가 고민하며 그동안 국립국어원의 국어 능력 평가 사업에 관여하였던 일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이 국어 능력 평가 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어 능력 인증 시험'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국어 능력 검정을 시행할 때 필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출제와 성적을 처리하는 일을 하였다. 2008년에는 '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사업의 책임을 맡아 문법 능력을 중심으로 군 간부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2013년에는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문항 개발과 채점 등을 하였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이다. 평균 67점의 매우 정상적인 분포의 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계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한 인터넷 신문에서 “군 간부 국어 실력은 ‘양’”이라고 제목을 달아 발표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직접 통화를 하니 평균 67점은 ‘양’이 맞다고 하였다. 언론 기사에 국방부는 난리가 났고, 연구 책임자인 나에게 연락이 왔다.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다.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군 장병의 국어 능력과 관련된 국방부의 연락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 일로 군은 비상이 걸리고 나라는 초긴장 상태가 되었는데, 오히려 국어 능력 관련 보도에 따른 나의 긴장은 일시에 해소되었다.

이 일로 깨달은 것은 국어 능력 점수가 군 내부의 복잡다단한 모든 현상을 사실 그대로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의 국어 점수가 고급 간부의 점수보다 높다고 하여 고급 간부의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이는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어휘 선택이나 바른 문장을 쓰는 데 필요한 어법 차원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과 해당 분야에서 실제 사용하는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해당 분야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문법적 정확성 차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기 위해 대전 육군본부의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이때 연구진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이야기도 들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군 간부들이 교육 기관에서 접하는 야전 교범의 언어를 개선하

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아이디어이다.

우리는 띄어쓰기를 조사, 의존 명사, 접사, 어미 등에 대한 문법 지식을 통해 익히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임관 초급군 교육 기관에서 접하는 야전 교범은 학생에게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여기에 있는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잔재, 미군의 FM(field manual, 야전 교범)을 번역하면서 등장한 번역투 문장들이 그대로 한국군의 언어 인식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학생 때부터 교과서의 글을 거의 진리처럼 신봉하도록 학습된 초급 간부들은 야전 교범의 어휘와 문체를 군대 언어 공동체의 규칙과 관습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이미 부적합한 언어 표현에 노출된 군 간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직접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들이 군 입문기에 교과서처럼 접하는 야전 교범의 언어를 다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어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얻은 이러한 통찰도 후속 연구나 사업의 부재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듯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어 능력 평가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나 국어 능력 신장은 '국민'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25명이 있는 초등학교의 한 교실을 생각해 보자. 담임 교사는 25명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학급 회장과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글을 정확하게 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알려 주고 있다. 학급 대부분은 평범한 아이들이다. 하지만 비행이 잦아 동네 파출소에 몇 차례 불려갔던 아이, 부모가 늦게까지 일해 늘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해 독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아이, 돌아가며 책 읽을 때를 빼놓고는 입을 열지 않는 아이, 친구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쉬는 시간에도 늘 혼자 있는 아이, 낮은 자존감에 거친 말투로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도 있다.

여기에서 담임 교사는 학급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의 다면성을 깨닫는다. 첫째, 이미 월등한 실력을 보유한 임원들의 국어 능력을 더욱 신장하여 학급의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 둘째, 25명 전원의 국어 점수를 3점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 셋째, 뒤편에 앉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이다. 지난번 시교육청에서는 학급 회장만 대상으로 국어 능력을 측정할 바 있고, 이번에는 전체 조사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 전체 667개 학급 중 1명을 선정하여 국어 능력을 측정하여 ‘보통’ 판정을 한 적이 있다(현재 전 국민 실태 조사의 표본 수인 3,000명을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5명 학급 667개인 1만 6,000여 명 중에서 1명꼴이다). 담임 교사는 그 ‘보통’의 능력이 지시하는 바를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급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 2. <국어기본법>에 의한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에서는 법률 제11690호인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국어 능력 검정 관련 조항에 의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태 조사 결과를 5년 주기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 5년 주기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에 관한 사항

〈국어기본법〉 제23조(국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어 능력의 검정 방법)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국어 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그 전에도 다음과 같이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김문오 외(2005),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 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동환 외(2008), 국어 능력 검정 모의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9),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종철 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이러한 기초 연구와 함께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 연구도 있다.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위의 연구 목록에는 ‘평가, 조사, 시험, 실태 조사, 검정’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국어기본법>에도 제9조에는 ‘실태 조사’, 제23조에는 ‘검정’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서조차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평가의 영역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10년여에 걸친 기초 연구와 조사 연구의 축적, <국어기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값진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김종철 외(2013)의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3,0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평균 점수만 도출한 것이 아니라 ‘앵고프(Angoff)’라는 과학적 방식으로 등급 분할 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표 1] 2013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개관

영역	문항 수	시간(분)	배점	평균 점수	성취도	조사 방식
읽기	20	40	300	190.66	64%	선택형(객관식)
문법	10	10	150	88.14	59%	
듣기	10	15	150	108.88	73%	
쓰기	3	30	250	122.07	49%	수행형(주관식)
말하기	3	15	150	69.79	47%	서답형(주관식)
합계	46	110	1,000	579.62		

출처: 김종철 외, 2013

기초, 기초 미달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등급화하였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5년 주기의 실태 조사를 염두에 두고 2018년에 실시할 평가와 비교하기 위해 평가 영역별로 가교 문항을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평가 시행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 점, 변인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에 사용한 조사 도구의 특성과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의 주요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체 국어 능력은 우수가 11.9%, 보통이 33.4%, 기초가 45.9%, 기초 미달이 8.8%이다.
- ②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기초 및 기초 미달 등급의 비율이 높다.



- ③ 성별: 남성(574.65점)과 여성(584.75점)의 국어 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 ④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어 능력 점수가 낮아진다(20대(600.76점), 30대(598.80점), 40대(572.98점), 50대(549.27점)).
- ⑤ 지역 규모별: 대도시가 중소 도시보다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대도시(593.37점), 중소 도시(563.54점), 읍면 지역(576.87점)).
- ⑥ 직업군별: 정신 노동자(603.91점)가 육체 노동자(555.59점)에 비해, 기타(588.21점)가 육체 노동자에 비해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
- ⑦ 학력별: 대학교 재학 이상(600.65점)이 고등학교 졸업자(559.55)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538.55)보다 국어 능력 점수가 높다.

### 3.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반성

앞서 언급한 10년여의 연구가 지향하는 근본 목표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부단한 연구의 근본 목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23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23조(국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는 이 시점

에서,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근본 취지인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책의 시행 주체는 누구인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산과 인력 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나 역효과는 없는가 등 일련의 질문에 뾰족한 해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2013년의 연구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평가의 유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시행한 것이다. 그 정도의 자원으로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한 점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반박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3,000명의 표본 수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가? 능력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설문 조사라면 3,000명의 표본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 4,799만 761명(2010년 통계청 전국 총 조사 인구 기준)에서 3,000명이면 1만 6,000명 가운데 1명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경향성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파악한다는 점이다.
- ② 통계청의 인구 조사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교육부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다. 이 밖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국립국악원에서 국민의 국악 능력을 파악하는가, 국립박물관에서 역사 능력을 평가하는가? 들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 기관명에서 목표를 드러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조차 전 국

민의 체력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을 ‘전 국민’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가?

- ③ 성인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타당한가? 이번 평가 도구는 제한된 예산과 평가의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최적화한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자면, 성인의 국어 생활에서 선택형 문항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문법 지식을 선택형으로 묻는 경우가 있는가, 개별 조사원의 방문을 통한 조사는 평가의 시간과 공간, 평가의 긴장도 등 평가 환경의 균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등 여러 차원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④ 평가의 결과로 밝히지 못한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성과 남성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만약 ‘성별’ 변인과 ‘연령’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작용을 추정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처럼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 참여 비율이 낮은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읽으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
- ⑤ ‘대도시 > 읍면 지역 > 중소 도시’라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통제하지 못한 다른 변인은 무엇인가?
- ⑥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통해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현대 노동 환경에서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엄격한 구분이 가능한가? 육체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위에 나열한 여섯 가지 미시적인 질문이 생성해 내는 메시지는 ‘연구 결과로 과연 구체적인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 정책 수립이 가능한가?’이다. 현재의 평가 방법은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에 사용된 영역과 변인은 국어 능력 신장을 전제로 한 것인가, 평가 그 자체를 전제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능력 평가’라는 대전제는 2013년 국어 능력 평가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미 무색해졌다. 평가에 사용한 1년 외에 남은 4년 동안 심도 있는 원인 분석, 교육 내용 마련과 교육 시행 등 정책 제언이 있었지만 2013년 국어 능력 평가의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연계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는 <국어기본법> 자체가 갖는 구조적 차원의 원인이 있다. 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검정을 독립 조항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마련해야 하는 발전 계획에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실태 조사든 검정인든 실시 후 국어 능력 평가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어 능력 신장에 대한 후속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십상이다. 과학적 평가 도구로 5년마다 국민의 국어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후속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근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사실 <국어기본법>에는 국어 능력 평가를 5년 단위로 실시하라는 문구는 없다. 5년 단위로 마련해야 하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실태 조사를 반영하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5년 단위의 대규모 평가가 아니더라도 매년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국어 능력의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평가 자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인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교육 내용 개발, 교육 평가 등의 환류 체계 내에서 정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 4. 향후 국어 능력 평가가 고민해야 할 지점

사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 직접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규모 표본 내에 각 집단의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집단별, 직종별 능력을 전체 국어 능력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어 능력 평가의 시행 범위를 좁히고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 4.1.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을 ‘전 국민’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닌가? 마치 “10년 전에 비해 16세 학생의 평균 키가 5센티미터 커졌습니다.”와 같은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접근을 한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 1만 6,000 대 1이라는 비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집하는 것과 국어 능력 신장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의 국어 능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 직무

연수의 주요 수강생은 공무원, 군인, 교사이다. 모두 국민 공통 교육을 충분히 받고 매우 높은 수준의 선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평가 대상의 선정과 더불어 이러한 직접 교육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 4.2.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어 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성인의 국어 사용 환경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 기관이 정책의 시행 주체라고 할 때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말과 글의 사용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물론이고 적절하기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열린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제목은 떠오르는데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은 그리기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직망을 갖추고 시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지점도 있고, 여성가족부처럼 세부 조직망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근이 가능한 분야는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분야이다. 이는 최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채용에서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직업 문식성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수준별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 문식성 핵심 교육 과정(Adult Literacy Core Curriculu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부터 학문 분야와 직업 분야로 진로를 구분하는 독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교육 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인의 국어 능력 평가는 단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초·중등 교육의 영역별 점수 외에 실제적인 국어 사용의 내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 문식성, 매체 문식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3.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도구와 관련해 2013년의 평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 환경의 균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방문 조사는 면접원 개인이 조성하는 평가 환경의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 직접 평가를 한다면 집합 평가를 통한 통제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의 도입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성인의 국어 생활을 고려할 때 선택형 지필 평가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공공 기관에 방문해 서식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요청하는 직접적인 언어 수행 장면에서 개인이 직접 산출한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도, 점수를 산출하여 평균을 내고 비교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국어 능력의 실태를 조사해 구체적인 처방을 위해서라면 시행 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 5. 나가며

〈국어기본법〉10년 시행 후, 세부 정책인 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여러 고민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과 고민이 필요한 지점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앞서 이야기한 초등학교 교실로 다시 시선을 옮겨 보자. 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 동안 자신이 맡은 학급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담임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독서 습관 기르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다. 예산도 그리 크게 소요되지 않고 단기간은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25명 전체 인원의 국어 점수를 일괄적으로 3점씩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험을 쉽게 출제하면 가능하지만 학급 아동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학급 임원의 국어 능력을 더 신장하는 방안과 뒤편에 앉은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여 그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남았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책은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of Educational Statistics)에서 1992년과 2003년에 실시한 성인 문식성 조사(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에서 전국 107개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 1,200명을 조사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이미 공교육과 사교육의 적절한 도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보유한 아이들(공무원, 군인, 교사)에게 다가갈지, 아니면 뒤편에 앉아 있는 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 국어 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지를 생각한다면 안개 속에서도 나뭇 선명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국어 능력 검정과 관련된 제23조 바로 위인 제22조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제22조(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동환 외(2008), 《국어 능력 검정 모의시험 방법 연구》, 국립국어원.
- 김문오 외(2005),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성규 외(2006), 《국어 능력 조사 방법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종철 외(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박재현 외(2008), 《국군 장병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윤여탁 외(2009), 《교사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장경희 외(2009),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장소원 외(2012),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국어문화원 제도와 공공 언어

남영신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원장

## 1. 개요

우리나라에 국어문화원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공공 기관의 언어를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은 <국어기본법>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대체로 시민 단체 등에서 벌인 한글 전용 운동이나 국어 순화 운동이 있었다. <국어기본법>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 단체의 국어 관련 운동 대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립국어원이 국어 관련 운동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게 되었고, 특히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이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어 관련 운동은 정부나 국어문화원이 수행하는 공식 영역과 국어 운동 단체가 추진하는 비 공식 영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국어 개선 운동의 추진 상황, 특히 공공 언어 개선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공공 언어 개선 분야에서 국어문화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 1.1. 국어상담소 지정

국어문화원은 초기에 국어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1월 27일에 공포된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상담소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국가(주무 기관: 국립국어원)는 2005년 10월 1일에 전국에 11곳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였다. 대학 9곳, 방송사 1곳, 시민 단체 1곳이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3곳, 충북 2곳, 충남 1곳, 광주 1곳, 부산 1곳, 경남 1곳, 대구 1곳, 경북 1곳이었다.

[표 1] 전국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2005년 10월 1일 현재)

번호	상담소 이름	특성	지역
1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대구
2	경상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경남
3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시민 단체	서울
4	동아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부산
5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천안
6	영남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경북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서울
8	전남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광주, 전남
9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충북
10	충북대학교 국어상담소	대학	충북
11	한국방송 국어상담소	방송사	서울

## 1.2. 국어상담소의 역할

〈국어기본법〉이 제시한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어상담소가 어떤 일을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어상담소가 참여하는 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회를 중심으로 국어상담소가 추진할 일들이 무엇인지 각 상담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국어상담소가 국민에게 인식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려면 모든 국어상담소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지만 그런 일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많은 논의 끝에 국어상담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파악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국어 상담 서비스: 법의 규정으로 보나 기관의 이름으로 보나 일단 국어 상담이 국어상담소를 대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각 국어상담소가 자체 역량을 발휘하여 해당 지역민에게 국어 관련 상담을 한다는 점을 알리고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어상담소 간에 차이는 있지만 초기 국어상담소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국어상담소를 홍보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국어가 상담의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어상담소 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국민들의 국어상담소에 대한 인지도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대학에 설치된 국어상담소는 자기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치중하게 되었다.

② 국어 바로 쓰기 교육: 국어상담소가 주로 대학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교육은 주로 청소년, 군인, 공무원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높이려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국어상담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담소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한국어 강사 양성 교육: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 교육이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어상담소가 직접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초기 국어상담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상담과 교육, 귀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위의 사업도 사회의 수요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내용이 바뀌기도 했다. 특히 국어상담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국어 상담 기능이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 서비스 강화와 공공 언어 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비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방 자치 단체의 국어 수요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국어상담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이들 행사가 국어를 매개로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뜻있는 행사로 정착됨으로써 한글날을 전후로 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국어상담소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 1.3. 국어상담소에서 국어문화원으로

이런 상황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어상담소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담소’가 갖는 이미지가 국어를 문화적으로 폭넓게 바라보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상담소의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서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는 데 모든 상담소가 동의하여 명칭 개정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2008년 3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어문화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국어기본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의 국어상담소 지정 규정과 내용은 완전히 같고 명칭만 ‘국어상담소’ 대신에 ‘국어문화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문화원이 어떤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어문화원의 사업 수행으로 대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칭이 국어문화원으로 바뀐 뒤 주무 기관이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로 변경되면서 국어문화원의 기능 중 국어 문화 행사를 지역별로 추진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국어문화원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현재 지정된 국어문화원은 총 20곳이다.



[표 2] 전국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2015년 9월 30일 현재)

번호	상당소 이름	특성	지역
1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대구
2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경남
3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시민 단체	서울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부산
5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충남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경북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서울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광주, 전남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충북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충북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방송사	서울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강원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전북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제주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울산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대전
17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인천
18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경기
19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대학	전남
20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시민 단체	서울

## 1.4. 국어문화원 정체성 확립

사회의 국어 수요에 맞추어 국어문화원을 될수록 많이 지정하려고 하던 문화부의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20곳 지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국어문화원의 양적 성장은 곧 국어문화원 기능의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까지 국어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그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어문화원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국어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1.4.1. 지역 사회의 국어 교육 기관

[표 3]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어문화원의 공무원(군인 포함) 대상 공공 언어 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와 함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도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교육을 종합하면 2012년의 교육 인원이 3만 3천 141명에서, 2013년 3만 2천 270명이었다가, 2014년에 5만 602명으로 증가하

[표 3] 국어문화원의 사업 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국어 상담		14,176건	9,044건	13,761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민간인 대상	19,833명	17,402명	25,622명	
	공무원, 군인 대상	13,308명	14,868명	24,980명	
	이주민 대상	4,478명	335명	113명	
지역 국어 대회(행사)		2,490명	2,822명	4,888명	
행사 참가 인원		54,285명	44,471명	69,364명	

출처: <전국 국어문화원 사업 백서> 2012, 2013, 2014에서 가공한 것임.

였다. 이는 그동안 국어문화원이 국민들의 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문화원이 학교 밖 국어 교육 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은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어서 국어문화원이 국립국어원의 일을 지역별로 대행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을 위한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문화원이 국립국어원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 1.4.2. 국어 행사 주관 기관

[표 3]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국어문화원이 지역별로 벌이는 각종 국어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문화원이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벌이는 국어 행사가 지역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국어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어문화원을 빼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까지 국어 관련 행사를 지방 자치 단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의 ‘안녕! 우리말’ 사업과 연계한 여러 행사를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사가 다양해지고, 이 행사를 지역의 국어문화원이 주관하게 됨으로써 국어문화원이 지역의 국어 관련 행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역 국어 행사로는 사투리(지역어) 대회, 지역 문화와 언어 축제, 좋은 간판 언어 뽑기, 우리말 겨루기 대회, 황금 사전 선발 대회 등이 있으며, 점차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국어와 관련한 더 멋진 대회가 지역 국어문화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 속에서 속속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 1.4.3. 국어 상담 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상담 기능은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반비례하여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이 상담하지 않는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상담이 차츰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화로 간단한 국어 문제를 질문하고 상담하는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문장 구성의 잘잘못이나 글의 줄거리를 바로잡아 주는 서비스, 논문 지도 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기능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줄어들 대신 학생이나 전문가의 글을 바로잡아 주는 국어 상담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학생과 전문가들 사이에 국어를 바르게 쓰겠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국어문화원이 새로운 부문으로 국어 상담 기능을 넓혀 나가게 되었다.

## 2. 국어문화원과 공공 언어

공공 언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2009년 5월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 설치된 것이 계기였다. 이때부터 공공 언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행정 언어가 공공 언어의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공공 언어에 대한 활동은 주로 공공 기관의 언어에 집중하여 공공 언어 바로 쓰기 교육, 공공 기관의 누리집 언어 검수, 행정 언어 순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공공 기관에 두게 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은 국어문화원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공공 언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 2.1. 공공 언어 정책과 국어문화원

공공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퍼블릭 랭귀지(public language)’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공공 언어 정책은 많은 부분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과 닮아 있다.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은 행정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2010년에 ‘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 of 2010)’으로 완성을 보았다. 이 법이 성립하기 전에 카터,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이 쉬운 영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은 백악관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 개혁의 실무 총책임자가 부통령이었고, 각 기관의장이 그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 책임자가 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다양한 관련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매우 수준 높은 지침서<sup>1)</sup>를 만들었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어기본법>에 기대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국립국어원이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을 책임질 담당자로 기관장이 아닌 홍보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은 아주 단편적이고 개별 기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공공 언어 개선의 방향이나 목표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총론적으로는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정립을 목표로 하지만 각론에서는 쉬운 언어의 정의, 바른 언어의 정의, 구체적인 문장 단위에서 어떤 문장이 쉽거나 바른지 종합적

1)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March 2011(이 지침은 2011년 5월 1일에 수정되었음).

인 지침이 없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어느 정도 이를 만들더라도 이 지침이 범정부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의견 불일치는 국민의 국어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도 공공 언어 정책의 총책임자를 대통령으로 두고(아니면 최소한 국무총리로 두고) 범정부적인 체계를 갖추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 언어 개선 일선에서 수고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이 공공 언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어책임관을 통하여 각 기관에 확산시키는 것이 현재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여기에 국어문화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겠다. 즉, 국어문화원은 국립국어원이 마련한 공공 언어 개선 지침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국어책임관과 협력하여 해당 공공 기관의 공무원을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가 이 개선 지침을 조례로 채택, 공문서 작성 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 2.2.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홍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가운데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쉬운 영어 정책이 기관장 책임 아래 추진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 행정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한이 낮고, 자신의 본업무도 아닌 국어책임관 업무를 과외로 받아 수행해야 하는 국어책임관이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이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어책임관 제도는 실효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이런 상태의 국어책임관을 어떻게 하든지 공공 언어 개선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연찬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고 있다.

### 2.2.1.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합동 연찬회

국어문화원과 중앙 부처의 국어책임관, 광역 자치 단체의 국어책임관은 1년에 1회씩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선으로 합동 회의를 하여 해당 공공 기관의 언어 상황을 점검하고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또한, 각 지역 국어문화원과 기초 자치 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도

[표 4]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공동 연찬회

연도	날짜	장소	참석 인원
2013	4. 26. ~ 27.	광주	국어책임관: 104명 (중앙 48명, 지방 56명) 국어문화원: 38명 문화체육관광부: 6명
2012	6. 19. ~ 20.	부여	국어책임관: 46명 국어문화원: 34명 문화체육관광부: 8명

2014년도 4월 제주에서 열 예정이던 연찬회는 불의의 사고로 취소함.



1년에 1회씩 꾸준히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광역 자치 단체 국어책임관이 주관하는데, 주로 기초 자치 단체 국어책임관의 공공 언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아직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어문화원과 공공 기관 사이에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과 그 통로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중앙 행정 기관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번호	본부 국어책임관	직위	소속 기관 국어책임관
1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2	감사원	공보관	
3	방송통신위원회		
4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5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장	
6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7	원자력안전위원회	홍보협력팀장	
8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9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	
10	국가보훈처	대변인	5개 지방 보훈처
11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7개 지방 식약청
12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장	
13	미래창조과학부	홍보담당관	4개 소속 기관
14	교육부	홍보담당과장	53개 소속 기관
15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	
16	통일부	홍보담당관	
17	법무부	홍보전문관	

번호	본부 국어책임관	직위	소속 기관 국어책임관
18	국방부	대변인	3개 소속 기관
19	안전행정부	홍보담당관	
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26개 소속 기관
21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	5개 소속 기관
22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5개 소속 기관
23	보건복지부	부대변인	10개 소속 기관
24	환경부		13개 소속 기관
25	고용노동부	홍보기획팀장	6개 지방 노동청
26	여성가족부	대변인	
27	국토교통부	홍보담당관	14개 소속 기관
28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	17개 소속 기관
29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30	관세청	국장	7개 소속 기관
31	조달청	대변인	12개 소속 기관
32	통계청	과장	7개 소속 기관
33	검찰청	대변인	
34	병무청	대변인	13개 소속 기관
35	방위사업청	대변인	2개 소속 기관
36	경찰청	홍보담당관	21개 소속 기관
37	소방방재청	공보담당관	3개 소속 기관
38	문화재청	대변인	4개 소속 기관
39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	4개 소속 기관
40	산림청	대변인	11개 소속 기관
41	중소기업청	대변인	11개 소속 기관
42	특허청	대변인	
43	기상청	대변인	5개 소속 기관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	
45	새만금개발청	과장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이렇게 보면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거의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 자치 단체의 광역과 기초 국어책임관을 합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거의 모든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국어책임관을 기반으로 하여 국어문화원이 해당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 가시적 성과의 하나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언어 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표 31 참조).

그동안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합동 연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 핵심은 국어책임관이 <국어기본법>이 정한 자신의 임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어책임관은, 행정 전문가에게 국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발상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공공 언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어문화원이 국어책임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어문화원이 공공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는 국어문화원이 공공 언어 개선이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했던 희생이었다.

### 2.2.2. 국어책임관 제도의 허점 보완을 위한 방안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그것은 현행 국어책임관이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공공 언어 개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어책임관도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업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의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국어책임관 업무를 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국어책임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국어 전문가가 아니다. 대체로 홍보 전문가이거나 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일 뿐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를 열심히 추진할 만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는 국어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자기 전문 분야와 동떨어진 업무를 추가로 맡도록 하여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언어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책임은 기관장이 지고, 실무는 전문가가 추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은 유명무실한 국어책임관 제도라도 이용해서 공공 언어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사이의 소통을 전담할 보좌관을 두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예산을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이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담화나 지시가 필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책임자가 되어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을 지휘해야 하며, 각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해당 기관의 공공 언어를 개선해 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크다.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 보자.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대체로 그 부서의 장이고, 이에 따라 실

무는 주무관이 맡게 된다. 그러면 국어문화원은 그 기관의 가장 하부 조직인 주무관과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사이에는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거의 실무적인 행사 위주로 협력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서만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3. 국어문화원의 공공 언어 개선 사업 성과

#### 2.3.1. 공공 언어 교육

국어책임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공공 언어 교육이다. [표 3]에서 보듯이 공무원 대상의 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실무 선에서 추진하기 쉽고 예산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문화원은 이런 교육이라도 자주 시행하여 공공 언어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공무원 대상 공공 언어 교육 계획을 세워 해당 기관에 보내면 그 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의 공공 언어 교육이 진행된다. 가끔 정부 기관이 교육 계획을 세워 국어문화원에 교육을 요청하기도 한다. 현재 공공 언어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3.2.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유인책

국어문화원이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의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인식을 높여 주는 유인책으로 공공 언어와 관련한 책자를 발행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특정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에 국한된 지침서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노력이 공무원의 언어 인식을 조금씩 바로잡아 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 모든 국어문화원이 자기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3.3. 조례 제정 지원

국어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하여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 언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초기에는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언어 개선을 자기들의 언어생활 개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인식했다. 그러나 국어문화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무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국민 언어를 개선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 언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대구, 인천,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 자치 단체가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에서도 벌써 26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 작업에는 각 국어문화원의 활약이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내용은 대체로 <국어기본법>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강한 일부 조례와 공공 언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례도 있다. 조례의 대강은 공문서 한글 사용을 전제로 하여 쉽고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담고 있다.

[표 6] 지방 자치 단체 국어 조례 제정 현황(2014.12.31. 기준, 총 38개(광역12, 기초26))

구분	광역명	기초명	조례명	제정일
광역 (12개)	강원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2013. 3. 15.
	부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2013. 10. 30.
	경남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2013. 10. 31.
	전남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1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글 사랑 지원 조례	2014. 1. 10.
	충남		충청남도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4. 2. 14.
	전북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2014. 6. 27.
	서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2014. 7. 17.
	울산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8. 7.
	경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4. 10. 17.
	광주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1. 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2014. 11. 12.
기초 (26개)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우리말 계승 발전 지원 조례	2008. 7. 15.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2010. 5. 20.
	전북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우리말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	2012. 11. 15.
	강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13.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30.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2013. 10. 1.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27.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8. 7.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9. 26.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	2013. 10. 4.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2013. 12. 19.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31.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6. 28.
	강원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2014. 12. 30.
	경기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세종 한글 사랑 진흥 조례	2014. 10. 30.
	경기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한글 사랑 지원 조례	2014. 10. 10.
경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11. 10.	

구분	광역명	기초명	조례명	제정일
기초 (26개)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1. 7.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2014. 9. 19.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1. 24.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2014. 5. 20.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사랑 조례	2014. 2. 7.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2014. 2. 27.
	충남	보령시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12. 22.
	충남	부여군	부여군 국어 사용 촉진 조례	2014. 12. 30.
	충북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4. 4.

### 3. 맺음말

법과 제도의 미비함, 예산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어문화원이 공공 언어 개선에 선도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 많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가 쌓이면 언젠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고마워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성취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공공 언어 개선도 그런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일찍이 국가가 언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회는 통합과 소통에 어려움이 비교적 적어서 국가 발전을 손쉽게 이루었다. 반면 국가가 자기 언어 발전을 억제하거나 방해한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국민의 창의성도 발휘되지 않아 결국 국가가 분열하고 침체되는 비운을 맞았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우리나라는 과거 약 50년 동안 한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의 문맹률이 줄어들고 지



식 습득의 기회가 넓어져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언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만하게 사용되는 면이 있다. 특히 공공 언어에서 어려운 전문어를 남발하고 외국어를 남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문으로 언어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회 분열과 침체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이 범국가적인 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날까지 국어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확인한다.

[특집] <국어기본법> 시행 10년, 그 성과와 나아갈 방향

—  
전문용어 정비와  
표준화의 실제 방향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  
은희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립암센터 초빙의

## 1. 머리말

전문용어는 우리말 어휘에서 이미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몇몇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용어 정비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용어가 정비되거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용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전문 분야 사람들의 남다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전문용어 제작에 필요한 어문학적 경험을 추가로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국어 학자들에게 실제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들이 점차 전문용어에 접하는 상황이 잦아짐을 고려해 볼 때 전문용어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 대중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문 분야에서 한 개념의 용어는 가능한 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원어 개념을 여러 우리말로 번역해 사용하면 혼란이 야기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표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용어의 표준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다음과 같이 기본 지침이 확정돼 있다.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 행정 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권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술 단체 및 사회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법의 정신에 따라 실제로 전문용어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의 한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가 <국어기본법>에 따른 전문용어 정비를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언론 매체에 부각되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용어만을 겨우 정비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문용어의 수는 막대하므로 이들을 전부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모한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점차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스스로 전문용어의 정비가 우리말 발전 및 선도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문용어는 자세히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어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를 자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말 발전의 많은 부분이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 2. 의학 분야의 현황

오래전부터 의학 분야는 의학 용어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용어의 건전한 방향 설정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의학 분야의 용어 제정과 표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문용어 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 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 용어집》 1판을 낸 때는 1977년이었다. 약 2만 개의 의학 용어가 수록된 1판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의료 보험 제도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둘러 제작되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84년에 약 4만 단어로 구성된 2판을, 1992년에는 약 12만 단어로 구성된 3판을 차례로 발간했다. 《의학 용어집》은 판을 거듭할수록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에 일본 학자들이 만든 의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전환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에 발간된 약 5만 4,000단어로 구성된 《의학 용어집》 4판은 우리말 순화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 당시부터 의학자들뿐 아니라 국어 학자들을 참여시켜 많은 의학 용어들의 우리말 제작과 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 원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용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병렬시켜 앞에 위치한 것을 권장 용어로 제시해 훗날 단일 표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권장 용어의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비단 권장 용어로 그치지 않고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바로 반영되어 실천 면에서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학 용어집》 4판과 그 이후 의사협회 용어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용 한자에서 벗어난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된 의학 용어들을 고유어나 쉬운 한자로 바꾸었으며(예: 어린선 → 비늘줄, 둘째로 상용 한자로 구성된 용어라고 해도 한자의 동음이의어가 문제가 되어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용어들을 고유어를 활용하여 대체하였대예: 열모 → 털찔짐). 셋째로 번역이 어려워 외국어를 발음 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말로 새로 제시하였대예: 헤르니아 → 탈출증. 넷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

는 용어가 아닌 전형적 일본식 한자 용어를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어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예: 흑자 → 흑색점, 길항 작용 → 대항 작용, 우리말 문법이나 표현에 기초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내었다예: 교반 → 휘저음, 천명 → 썩썩거림, 루 → 셋길(은희철 2015:59, 20~30).

《의학 용어집》 4판의 출간은 의학계뿐 아니라 의학 외 분야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발전적인 면에서 좋은 의미의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기존 용어를 고수하려는 측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의학 용어집》 발간 과정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의학계 각 분과 학회(피부과학회, 미생물학회 등)들과 사전 모임을 개별적·그룹별로 갖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분과 학회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에 매우 비협조적인 곳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용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어 모든 분야들이 의사협회의 방침에 잘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반발의 대안으로 파급 효과가 큰 약 1만 단어를 선정하고 일부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에 《필수 의학 용어집》을 발간한 뒤 온라인으로 공표하여 새로운 용어들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단 공표되고 의사 국가시험에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된 이후에도 원래 용어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반발에 대한 타협안으로 2009년에 발간된 《의학 용어집》 5판에서는 4판과 체제는 거의 같으나 권장 용어의 개념을 없애고 권장 용어든 기존 용어든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서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아울러 4판에서 삭제했던 한자 용어를 일부 복원했으나 전체적인 본문의 체계는 4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분과 학회에서 새 용어에 대한 저항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옛날 용어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움직임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용어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하루빨리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되어, 의사협회에서는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문제가 되는 중요 용어들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권장 용어 200여 개를 최근에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의사협회는 앞으로 기본적인 권장 용어를 확정하고 이를 다른 파생어로도 확대할 계획인데,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모든 의학 전문용어들에 어떻게 파급될지는 현재 준비 중인 《의학 용어집》 6판에서 지켜볼 일이다.

### 3. 저항의 이유

전문용어 순화나 제작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원어를 처음 번역하는 것보다 기존 용어를 순화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특히 논의의 핵심이 되는 한자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유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 성향, 교육 정도, 각 분과 학회 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문용어를 새로 제작할 경우는 몇몇 용어 위원들의 합의와 국어 학자의 자문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미 사용하던 용어를 순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사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은 왜 힘들었을까? 그간 의사협회의 전문용어 개혁은 사실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각 분과 학회의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항이 끊임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몇 영향력이 있는 핵심 인사들의 개인 의견이 끈질기게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항의 결과로 의사협회의 권장 용어 정책의 방향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용어 정책의 성패에 가장 중심적인 이 문제를 좀 더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미 저서에서 이를 자세히 분석한 바 있으며(은희철·송영빈·정인혁 2013:267~273),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수필에서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바 있다(은희철 2015:60, 22~31).

### 3.1. 순화 용어 자체가 흔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순화 용어가 흔히 알려진 고유어일 경우, 예를 들어 종전에 사용하던 용어인 ‘개선(疥癬)’을 ‘옴’과 같은 말로 바꾸려 할 때 큰 부담 없이 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유어가 흔히 알려져 있지 않은 용어일 때는 저항이 매우 심하다. 대표적인 예가 ‘glomerulus’이다.

의학 분야에서 ‘glomerulus’는 몇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나 작은 실핏줄이 뭉쳐 있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glomerulus’는 과거부터 ‘사구(絲球)’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토리’라는 고유어가 새로 제시되었다. 토리는 실을 둥글게 만 뭉치라는 고유어이나 흔히 접하는 말이 아니다. 물론 ‘사구’도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점은 같다고 본다. 더구나 둘 다 혈관이 둥글게 뭉쳐 있다는 은유적 표현이므로 처음에 접하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은 아니다. 따라서 ‘사구’를 ‘토리’로 바꾸려고 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매우 심했으며, 고유어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필자도 ‘토리’라는 말을 용어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했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말을 제시했을 때, 누구나 이를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말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방적 자세인가, 아닌가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업적 자존심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의사이며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껏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었던 말을 쉽게 받아들일지? 물론 이 경우 ‘사구’라는 말이 없었다면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 3.2. 상용 한자로 된 용어이거나 이미 많이 알려진 한자 용어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표적인 한자어 전문용어와 그 후에 제정되었던 고유어를 활용한 전문용어의 짝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결석/돌, 복수/뱃물, 호흡/숨’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고유어로 구성된 말들이 좀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범한 한자로 구성된 말이라도 한자는 음절 수 제한으로 동음이의어가 많아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 자체도 이미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이며 의미 연상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므로 새로 제시된 고유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은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바꾸면 해당 전문 과에서는 당분간 매우 번거롭게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막상 바꾼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 경우에는 비슷한 용어들의 통일성 문제를 늘 의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모든 관련 용어나 합성어들을 사전에 다 검토해야 하므로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 3.3. 고유어 사용으로 길어진 음절 수에 대한 저항감

근육이 자발적으로 운동할 경우, 근육 상호 간에 협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ataxia’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번역으로 ‘실조(失調)’란 용어를 써 왔다. ‘실조’란 조화를 상실한다

는 뜻인데 그 자체가 간략한 면은 있으나 실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의학 용어집》 4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인 ‘조화운동못함증’으로 제안되었다. ‘실조’를 구성하는 한자는 둘 다 상용 한자에 속하나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자들이다. 그런데도 《의학 용어집》 5판에서는 다시 ‘실조’로 돌아갔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새로 제시된 용어가 길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운동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조화상실증’을 새로 제시하고 싶다. 사실 ‘실조’란 말 자체도 조화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단 ‘실조’는 동음이의어 관계로 의미 유추가 어렵다는 것뿐이다. ‘조화상실증’은 물론 ‘조화운동못함증’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ataxia’란 말의 어원 자체(taxis는 질서라는 뜻이며 이의 부정형임)가 의미하는 것에 오히려 정확히 일치한다.

‘adipsia’도 ‘무갈증’이란 한자어 대신 ‘목마름없음증’이란 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정을 의미하는 ‘무’를 ‘없음’으로 전환한 것도 충격이나 흔히 쓰는 말인 ‘갈증’을 ‘목마름’으로 변화시킨 데다 이로 인하여 음절 수가 배로 늘어났다. 오히려 ‘갈증없음’이나 ‘갈증없음증’이라는 말을 제시하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갈증’이라는 말은 의미 전달이 쉬운 평범한 한자어이다. 이를 ‘목마름’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하여 같이 전환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이로 인해 음절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것은 간혹 지나친 고유어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목마름없음증’이 용어로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용어는 의미 전달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간결해야 사용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용어 제작에서 음절 수를 줄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프로 골프 선수가 한 타 수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전문용어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최소의 음절 수를 추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 3.4. 의미 파악이 어렵지만 방송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한자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친숙하다는 이유로 새로 제작된 용어를 분과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용어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매’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중요한 용어인데 초기 단계에서 잘 정리하지 못해 일단 굳어진 경우이다. 일단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면 나중에 제아무리 좋은 용어를 만들더라도 바꾸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는 ‘골다공증(osteoporosis)’을 들 수 있다. ‘골다공증(骨多孔症)’이란 뼈의 실질 조직이 감소하여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골절을 잘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이 말은 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말에 기원하는데, 실제로 방사선 조사를 해 보면 뼈조직이 감소된 것이 여겨지기 나타난다. 수세미와 같이 영성하다는 개념을 활용한 ‘뼈영성증’이라는 고유어를 의학용어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국어 학자들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골다공증’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골다공증’이란 말은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의미 유추가 매우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러한 말이 이미 방송 매체나 일반인에게 널리 퍼진 상황에서는 바꾸는 데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혹 공식적인 권장 용어로 ‘뼈영성증’이 채택되지 못한다 해도 개념에 입각한 쉬운 말을 일반 사전에 추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란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3.5. 제시된 고유어가 의미 전달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의학 용어집》 3판에 ‘margin’은 ‘연, 경계’로 4판에서는 고유어를 활용하여 ‘1. 모서리 2. 가장자리, 경계’로 정리되었으며, 5판에서는 ‘1. 가장자리 2. 모서리 3. 경계’로 정리되었다.

‘모서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모가 진 가장자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특수하게 각진 경우에 한정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자리가 낫다고 본다. 더 짧은 말로 ‘가[예: 물가, 냇가]란 말과 ‘변두리’란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margin’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border’라는 말은 ‘가장자리, 모서리, 경계’로 번역되어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학 용어집》 5판에 기술된 모서리를 사용한 일부 합성어는 가장자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예: gingival margin, 잇몸모서리 → 잇몸가장자리. 그러나 가장자리의 한 가지 흡은 음절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따라서 말이 너무 길면 제한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음절 고유어 ‘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예: eyelid margin, 눈꺼풀가장자리 → 눈꺼풀가, 동공가장자리 → 동공가. 고유어에서 단음절은 간결성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를 잘 사용하면 그 이용 가치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해야 한다.

### 3.6. 상업적 측면

depilation 털제거(술), 제모술

dermabrasion 기계적벗김술, 박피술

lipoaugmentation 지방키움술, 지방확대술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개인 병원에서 미용과 관련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각 용어에서 앞의 것(털제거(술), 기계적벗김술, 지방키움술)은 《피부 과학 용어집》 3판에서 추천한 용어이며, 뒤의 것(제모술, 박피술, 지방확대술)은 과거에 쓰던 용어다. 개원의들 중에는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된 용어 변경에 저항이 많으며 종래 사용하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모술’로 현재 ‘제모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다. ‘벗김술’은 초창기에는 주로 기계적벗김술을 사용했으나 요즘은 세분화했다.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 화학벗김술, 레이저를 사용하면 레이저벗김술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도 개념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얼마 전 한 경제학자와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는 새로운 우리말 용어를 하나의 상품 가치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점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 놀란 일이 있었다. 상업적 측면은 전문가들의 용어 선택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존 용어를 순화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인간 심리학과도 깊이 연관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용어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러한 일에 쉽게 합의할 수 없는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

#### 4. 음차 용어 사용의 문제점

전문용어는 가능한 한 모국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어(대부분 영어)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하거나 만들어 쓰지 않고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용어(음차 용어)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은희철·송영빈·정인혁 2013:255~256).

음차 용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문용어를 우리가 그나마 차용하여 왔지만 점차 일본 학자들도 새로운 원어에 대응하는 일본어 제작에 한계를 느껴 원어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추세이다. 음차 용어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며 특히 번역이 무의미한 화학명이나 인명, 지명 같은 것들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적절한 우리말로 충분히 다듬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음차 용어를 쓰려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ibrin’이란 말을 ‘섬유소’로 쓰려 하지 않고 ‘피브린’으로 쓰려 한다든지 ‘epitaxi’를 ‘켜쌍기’로 쓰지 않고 ‘에피탁시’로 사용하려 한다. 음차 용어를 유난히 선호하고 이들이 번역어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 번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 시간 낭비이며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하겠다.
- 번역하려는 사람 자체가 언어 감각 내지 지식,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 음차 용어를 쓰면 초기에는 이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늘 묻게 되므

로 일시적인 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 후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개발하여 그 용어를 번역하더라도 쓰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에는 자신이 주도가 되어 번역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깊이 깔려 있다.
- 음차 용어를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좋다고 느끼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익숙하다고 하여 음차 용어의 사용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
- 번역어는 때로는 언어 장벽 때문에 그 원어의 모든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차 용어를 쓰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의학 분야 말고도 다른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음차 용어의 급격한 확대는 심각한 문제이다. 언어 순화 과정에서 음차 용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번역어를 쓸 것인가의 문제는 전문용어 표준화에서 시급히 결정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전문가들이 범람하는 음차 용어로부터 일차적으로 우리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영어가 한자어와 같이 우리말에서 주인 행세를 할 날도 멀지 않기 때문이다.

음차 용어를 부득이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분야별, 개인별로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통일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며 실제 전문용어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표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5. 의학과 타 분야의 표준화

의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 과학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유전학, 생명공학, 공학과 같은 이공계 분야 및 심지어 심리학, 인문과학, 예술 분야와도 연관이 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의학 대사전》에 실려 있는 용어 수를 보더라도 다른 전문 분야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학 분야의 전문용어 정비는 비단 의학 분야 내의 문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타 분야 용어와의 관계를 심각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2006년에 나온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과 2009년에 나온 《의학 용어집》 5판을 비교하여 보고 두 용어집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이 중 한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일부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다 제외하였으며, 오직 한 가지 원어(영어)가 같은 개념과 대상을 의미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용어가 정리된 것들만 골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표에 구분하여 정리하였다(은희철 · 송영빈 · 정인혁 2013:280~285).



### 5.1.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한 예

한 가지 개념의 용어를 두 용어집에서 서로 다른 한자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관찰되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들을 모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서로 다른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dextrorotatory	우회전-	우선성
diurnal variation	일일변화	하루변이, 일중변동
DNA repair	디엔에이[DNA] 수선	DNA 복구
elastic fiber	탄성 섬유	탄력 섬유
heteroploidy	이형배수성	이상배수성
induced mutation	인위돌연변이, 유도돌연변이	유발돌연변이
initiation codon	개시코돈	시작코돈
interface	1. 경계면, 계면	경계면, 접촉면
isoenzyme	동질효소, 동위효소	동종효소
mechanism	1. 메커니즘 2. 기구	1. 기전, 메커니즘, 기구 2. 기계론
pacemaker	길잡이, 심박조율기, 박동원, 박동기	박동조율기, 길잡이, 조정자, 발동기
pathogenesis	발병과정	발병기전
phototropism	광급성, 광굴성	굴광성, 향광성
spore	흄씨, 포자	흄씨, 포자, 아포
stroma	1. 버팀질 2. 기질	버팀질, 간질
surfactant	표면활성제,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 표면활성물질
transient	1. 과도적 2. 일시적	일과성

## 5.2. 고유어 활용의 차이

용어를 번역해 쓴 경우 한 용어집에서는 고유어를, 다른 용어집에서는 한자어를 쓴 사례도 있다.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고유어 활용의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aplanatic lens	구면수차지움렌즈	구면수차제거렌즈
attenuator	1. 감쇠기, 줄이개 2. 감쇠조절인자	감쇠자, 감쇠물
coat protein	겹질단백질	외피단백질
endospore	내생휴씨, 내생포자	속휴씨, 내생포자
hydrophobic	물밀침성, 소수-	소수-, 소수성
paper chromatography	종이크로마토그래피	여과지크로마토그래피
pendulum	흔들이, 진자	시계추, 진자
subculture	계대배양	대이음배양, 계대배양
taste receptor	맛수용기	미각수용기

### 5.3. 한쪽 분야에서만 통일된 예

같은 개념의 한 용어를 한 용어집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한 반면 다른 용어집에서는 한 가지로만 통일시킨 예들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한쪽 분야에서만 용어가 통일된 경우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arrangement	배치, 배열	배열
arthropods	절지동물, 마디발동물	절지동물
bile	쓸개즙	담즙, 쓸개즙
bone	뼈	뼈, 골
cartilage	연골, 물렁뼈	연골
citric acid	시트르산	시트르산, 구연산
coronary artery	심장동맥	관상동맥, 심장동맥
dark adaptation	암순응	암순응, 어둠적응
diplococcus	쌍알균	쌍알균(속), 쌍구균(속)
diploid	두배수체, 이배체	두배수체
encoding	부호화, 코드화	부호화
Eustachian tube	유스타키오관, 귀인두관	유스타키오관
free radical	자유라디칼	자유라디칼, 자유기
hanging drop culture	방울배양, 현적배양	방울배양
insecticide	살충제, 해충약	살충제
kidney	콩팥	콩팥, 신장
nymph	애벌레, 유충	약충
pylorus	날문	날문, 유문
sarcolemma	근세포막	근세포막, 근초
ultrafiltration	한외거르기	초미세거르기, 한외거르기

#### 5.4. 용어의 음차 표기 간 차이

한 용어의 음차 표기가 용어집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용어의 음차 표기 간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carboxylation	카복시화	카르복실화
cyanide	사이안화물	시안화물
cytochrome	사이토크롬	시토크롬
cytosine	사이토신	시토신
estrogen	에스트로젠	에스트로겐
hemocyanin	헤모사이아닌, 헤모시아닌	헤모시아닌
myoglobin	마이오글로빈	미오글로빈
niacin	나이아신	니아신
nucleoside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시드
nucleotide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pepsinogen	펩시노젠	펩시노겐
peptide	펩타이드	펩티드
progesterone	프로제스테론	프로게스테론
riboflavin	라이보플라빈	리보플라빈

### 5.5. 음차 용어 선호도 차이

용어집에 따라 용어를 음차하거나 우리말 번역어로 표기한 경우를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음차 용어 선호도의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chromatid	염색분체	염색분체, 크로마티드
conductance	1. 전도도 2. 컨덕턴스	전도도
fibrin	피브린	섬유소, 피브린
fibrinogen	피브리노젠	섬유소원, 피브리노겐
heterosis	잡종강세	헤테로시스, 헤테로강세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미토콘드리아
motor neuron	운동뉴런	운동신경세포, 운동뉴런
oscillograph	오실로그래프	오실로그래프, 진동기록기
placebo	속임약, 위약	속임약, 헛약, 플라세보
provitamin	풋비타민, 프로비타민	풋비타민
scanning	훑기, 주사, 스캐닝	스캐닝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주사전자현미경	스캐닝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subclass	아강	아강, 서브클래스
zymogen	효소전구체	효소원, 지모겐

## 5.6. 준말 선호도 차이

한 가지 의미의 용어이나 한 용어집에서만 준말을 사용한 경우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준말 선호도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color sense	색감각	색각
endoplasm	내부원형질, 속원형질	속형질, 내형질
inbreeding	1. 근친교배 2. 동계교배	근교배(법), 순계교배(법)
optic nerve	시각신경	시(각)신경
protease	단백질분해효소	단백분해효소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예들은 극히 일부이며 실제 수집하면 좀 더 다양한 예가 관찰될 것이다. 의학 내에서도 세부 분과 학회별로 같은 의미를 지닌 한 용어를 서로 달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분과 학회 자체들의 고집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것을 흔히 경험하였다. 따라서 같은 개념의 한 원어를 다른 분야에서 달리 사용하고 있을 때 중립적인 사람이나 단체가 표준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6. 의학계의 권장 용어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

손승국은 최근 의학 용어 원탁토론회에서 《의학 용어집》 5판에 실린 용어들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들에 실린 용어들을 비교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다(손승국 2013:200~215).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고유어를 사용하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일관성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로 가면서 한자 용어 사용이 많아졌다. 또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던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우는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즉, 초·중·고등학교 간의 교육 과정에서 의학 용어에 대한 연속성이 부족하고, 배우는 시기에 따라 용어도 변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학에서도 선행 학습의 효과가 후속 학습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전이라고 하는데, 그 학습 사이에 같은 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용어의 유사성과 통일성, 자극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의과대학에서 그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표 기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중요 권장 용어 200여 개 중 주로 장기와 연관된 용어들이다. 이 중에는 ‘esophagus 식도’, ‘stomach 위’와 같이 원어를 한 가지 말로 이미 통일한 것도 있지만 아직 한 가지 원어에 두 가지 이상의 우리말 용어들을 병렬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이 경우 짙은 글씨로 표시한 것이 권장 용어이다.

[표 7] 중요 장기에 관련된 우리말 권장 용어(질은 글씨가 권장 용어)

원어	우리말	원어	우리말
Esophagus	<b>식도</b>	Ascending colon	<b>상행결장</b> 오름잘록창자, 오름창자
Stomach	<b>위</b>	Transverse colon	<b>횡행결장</b> , 가로결장, 가로잘록창자
Gallbladder	<b>담낭</b> , 쓸개	Descending colon	<b>하행결장</b> , 내림잘록창자
Pancreas	<b>췌장</b> , 이자	Sigmoid colon	<b>구불결장</b> , 구불(잘록)창자
Cardia	<b>들문</b> , 분문	Rectum	<b>직장</b> , 곧창자
Pylorus	<b>날문</b> , 유문	Peritoneum	<b>복막</b> , 배막
Duodenum	<b>십이지장</b> , 샘창자	Common bile duct	<b>총담관</b> , 온쓸개관
Small intestine	<b>소장</b> , 작은창자	Lung	<b>폐</b> , 허파
Jejunum	<b>공장</b> , 빈창자	Thorax	<b>가슴</b> , 흉부
Ileum	<b>회장</b> , 돌창자	Pleura	<b>가슴막</b> , 흉막
Large intestine	<b>대장</b> , 큰창자	Kidney	<b>신장</b> , 콩팥
Cecum	1. <b>맹장</b> , 막창자 2. 맹관	Renal pelvis	<b>신우</b> , 콩팥갈래기

[표 기에 언급한 권장 용어들은 앞으로 착수하게 될 《의학 용어집》 6판에서 모체가 될 것이며, 이와 연관되는 많은 용어들을 가능한 한 정비할 예정이므로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비될 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실린 용어들과 상치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gallbladder’를 쓸개, ‘pancreas’를 ‘이자’로 표기하고 있다(손승국 2013:200~215). 그렇다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를 따라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이지만 많은 용어들을 누군가 최종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앞에 언급한 법령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표 8]에 수록된 용어는 [표 7]에 언급한 것 이외에 그동안 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권장 용어로 채택된 것들이다. 이들 권장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의학 용어집》 4판보다는 좀 더 타협이 이루어져 일부 한자어로 다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각 분과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들을 일부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분과 학회에서는 다른 분과 학회 용어의 순화 과정에는 다소 관대하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분과 학회 용어들의 순화에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별히 몇몇 용어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cervix’란 말은 ‘목’이란 뜻이며 기존에 경부라는 말을 다 목으로 바꾼다면 ‘uterine cervix’도 ‘자궁목’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cervical cancer’만 예외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내분비 관련 과의 요구대로 ‘gland’는 전부 ‘샘’으로 통일하였으나, ‘thyroid gland’는 ‘갑상선’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나 분과 학회들의 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분과 학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다 수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장 용어는 어떤 일률적인 철학하에 잘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타협안이 일반인이나 국어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다른 분야들과의 조정도 추후의 과제이다.

[표 8] 기타 중요한 우리말 권장 용어(질은 글씨가 권장 용어)

구분	원어	우리말
산부인과 관련	Uterine cervix	<b>자궁목</b> , 자궁경부
	Cervical cancer	<b>자궁경부암</b> , 자궁목암
내분비 관련	Gland	<b>샘</b> , 선
	Thyroid	<b>갑상선</b> , 갑상샘
순환기 관련	Cardiovascular disease	<b>심혈관질환</b> , 심장혈관질환
	Coronary artery	<b>관상동맥</b> , 심장동맥
	Aneurysm	<b>동맥류</b> , 동맥자루
	Chest pain	<b>가슴통증</b> , 흉통
	Angina pectoris	<b>협심증</b> , 가슴조임증
	Tachycardia	<b>빠른맥</b> , 빈맥
	Congestive heart failure	<b>울혈심부전</b> , 울혈심장기능상실
호흡기 관련	Inspiration	<b>들숨</b> , 흡기
	Wheeze	<b>쌩쌩거림</b> , 천명
	Pneumonia	<b>폐렴</b> , 허파염
	Pleurisy	<b>가슴막염</b> , 흉막염
	Pneumothorax	<b>기흉</b> , 공기가슴증
	Pneumoconiosis	<b>진폐증</b> , 폐먼지증, 허파먼지증
소화기 관련	Swallowing	<b>삼킴</b> , 연하
	Appendicitis	<b>충수염</b> , 막창자꼬리염
	Fecal incontinence	<b>대변실금</b> , 대변새기
	Cholelithiasis	<b>담석증</b> , 쓸개돌증
	Gastrostomy	<b>위창냄(술)</b> , 위조루(술)
	Pancreaticoduodenectomy	<b>십이지장절제(술)</b> , 이자삼창자절제(술)

구분	원어	우리말
신장 관련	Nephron	신장단위, 콩팥단위
	Cortex	피질, 겉질
	Glomerulonephritis	사구체신염, 토리콩팥염
	Hydronephrosis	수신증, 물콩팥증
	Urolithiasis	요로결석증, 요로돌증
	Chronic renal failure	만성신부전, 만성콩팥기능상실
기타	Optic nerve	시신경, 시각신경
	Aphasia	실어증, 언어상실증
	Tremor	떨림, 진전
	Epilepsy	뇌전증, 간질
	Osteomyelitis	골수염, 뼈속질염
	Osteoporosis	골다공증, 뼈영양증
	Suture	봉합, 꿰맬
	Incontinence	1. 실금, 새기 2. 실조
	Pyuria	고름뇨, 농뇨
	Nocturia	야간뇨, 야뇨증
	Allergic rhinitis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코염
	Otitis media	중이염, 가운데귀염
	Otoscopy	이경검사, 귀보개검사
	Back pain	요통, 등통증
	Spasticity	경직, 강직
	Purpura	자색반(증), 자반(증)
	Palpebra	눈꺼풀, 안검
	Nystagmus	안진, 눈떨림
	Bacillus	막대균, 간균, 바실루스
	Pus	고름, 농
Schizophrenia	조현병, 정신분열병	

## 7. 향후 정책 방향

향후 정책 방향을 논하기 전에 이 분야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전문 분야에서 전문용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용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학회 대부분에서는 회장이나 이사장의 임기가 짧아 임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용어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 용어집을 만든 경험이 있는 용어 위원들이 임기를 채우고 사퇴하고 나면 용어 위원들의 경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대한피부과학회나 대한해부학학회와 같이 약 10년 단위로 용어집을 제정하면서 용어집의 간사를 맡은 분을 차기 용어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연속성을 갖게 배려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학자들이 전문용어를 잘 순화하고 제작하는 일은 개인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연구, 교육, 진료를 해야 하는 교수들에게 용어 작업은 가장 인기가 없는 분야이다. 하나의 새로운 용어를 잘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애써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을 때 보상은커녕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어 학자들 역시 용어집을 제작할 때 개별 자문을 하기도 하나, 많은 학회에서 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충분한 예우를 해주지 못한다. 국어 학자들의 자문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어 학자가 전문용어 제작 초기부터 관여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제작해 놓고 감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용어 개념 파악의 한계성으로 인해 소정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구심점도, 관련된 조직도 없는 실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는 힘들다.

오랜 기간 의학계에서 전문용어 순화, 제작 과정에 관여해 오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 ① 전문용어 관련 시행령을 보면 이미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에 성패가 달려 있다. 담당 공무원들도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지식 대사전’을 보다 확대시켜 모든 용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말 전문용어 큰 사전’ 같은 원대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전문용어 정비 표준화 사업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분야별 전문용어들의 숫자를 늘려 표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 ②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모든 전문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용어위원회를 파악하고예: 의학 분야에서는 의사협회 용어위원회와 각 의학회 산하 분과 학회 용어위원회 이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에는 현재까지 제작 완료된 국내의 모든 전문용어를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충도 포함된다. 아울러 판권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모든 책자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 ③ 용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용어 위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용어 제작법을 강제적, 체계적으로 단기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용어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저학년에 일반 교양 국어 이외에도 전문용어 제작법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한 예로 의학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 실시할 예정이다).
- ④ 용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용어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수시로 토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이들 용어 중 중요한 용어에 의미가 있을 경우 국가가 최종적으로 중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상설 전문 위원을 많이 확충해야 하며 국립국어원 같은 단체와도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전문용어를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정비하면 좋지만 일이 많으므로 중요하고 빈도가 높은 용어들이나 각 전문 분야에서 시급히 정비하고 싶은 용어들을 우선 정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①에 언급한 장기 목표를 지향한다.
- ⑤ 전문용어 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여 국어 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아울러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 ⑥ 모든 공표된 최종 결정 사항을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온라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상설 대응 팀의 구성도 필요하다.

## 8. 맺음말

전문용어의 순화 과정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데 많은 경험을 제공하므로 좋은 전문용어 제작을 위해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전문용어들을 제대로 정비·표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말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전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말을 정비·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 참고문헌

- 손승국(2013), 전문학회의 의학전문용어에 관한 토론, 의학 용어원탁토론회  
201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은희철(2015), 기호와 의사소통, 《에세이스트》 59, 20~30.
- 은희철(2015), 반항의 산물, 《에세이스트》 60, 22~31.
- 은희철 · 송영빈 · 정인혁(2013),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10년의 회고

강승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1. 들어가는 말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통과되고 7월에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7년 재외 국민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원<sup>1)</sup> 자격 부여에 대한 내용이 제도적으로 공포된 것은 2005년 7월 <국어기본법 시행령>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국어 교원에 대한 자격 제도(제13조)’가 발표되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해 왔던 교원들에게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2005년은 꽤거를 이룬 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어떻게 그 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정착해 왔으며 학문 과정과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 평가해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표 이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1)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려 한다.

## 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정착 과정

### 2.1.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전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은 정부 주도의 기관 운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한 교육 기관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배경에 기인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 온 한국어 교원들의 자격을 규정하거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것이다. 국내 한국어 교육의 시작으로 보는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당시는 물론이고 1984년까지도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자격은 대학의 관련 전공 학부 과정을 마친 학사 학위 소지자였다. 1985년 이후 그 자격을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문 계열을 포함한 인문 사회 계열 전공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가 그 자격 조건이었다. 이런 자격 조건은 1980년대 중반에 이어<sup>2)</sup> 1990년대에<sup>3)</sup> 설립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강사 채용에 적용되어 왔다.<sup>4)</sup> 2005년 이전까지는 다른 요건 없이 관련 전공 석사

---

2) 1980년대 중반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 프로그램(현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1986)),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88) 등이 있다.

3) 1990년대에는 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1990), 서강대학교 국제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199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 과정(1991),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현 국제교육원(1992)),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 과정(1994) 등이 있다.

4) 이러한 조건은 2015년 현재에도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격

학위 소지자로 제한해 석사 학위 자격 이외에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이 갖추어야 할 별도의 전문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1980년 중반의 국제적인 행사였던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로도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1990년대 말을 거치면서 학습자 분포가 변했다. 2000년에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고 당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던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무후무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어 세계화’ 프로젝트였다. 이는 국내 한국어 교육 관련 학자, 연구자, 교수자를 한데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한 큰 움직임이었고, 이후 5년간 지속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5)</sup> 이 과제의 한 분과였던 교육 연수 분과의 과제들이 2005년 <국어기본법>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련되는 법 조항들을 입안하는 데 기초 연구로 반영되었다. 특히,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sup>6)</sup>는 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제도화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 2.2.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관련 조항(제13

요건이기도 하다.

- 5)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수)가 한국어의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으로서 기초 교육 자료 분과를 비롯하여 교육 연수 분과, 해외 보급 분과 등 12개 세부 과제로 수행한 대규모 과제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후에 다양한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6) 이 연구에는 과제 책임자로 민현식, 공동 연구원으로 최은규, 김제열, 이소영, 김정은 등이 참여하였다.

조, 제14조)이 공포, 시행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한국어 교원을 공식적·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한국어 교원에게 자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에서 내부적으로 요구해 오던 비공식적 자격 요건이 제도권 내 공식적인 지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 부여를 통해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과 한국어 교육 실제와의 관련성 등 좀 더 합의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를 말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훈련과 양성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한 데에도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한국어 교육 인력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유도 효과가 있다. 즉, 국내 한국어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국외 대학, 한글 학교,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식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이 필수임을 주지시키는 주의 환기의 기능을 하게 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2.3.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2006년부터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sup>7)</sup>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집단의 지적 등을 통해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전 자격 제도와 2010년 개정 자격 제도의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자격 부여 대상자 상세화, 둘째, 승급 요건의 강화, 셋째,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확대, 넷째,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어 능력 인증 결과 요구, 다섯째,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및 심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숙 2011:48~51). 2005년 시행령 공포 이후 2006년부터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해 5년 가까이 시행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들은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규정의 내용을 상세화하고 실제 교육 현장의 경력 등을 인정해 주기 위한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의 교육 능력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현황과 문제점

#### 3.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현황

2015년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와 유형별 양성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2006년부터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여 2015년 6월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만 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의 양성 기관 수도 176개로 집계되었다. 176개의 유형별 기관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부 40개, 대학원 102개, 사이버 대학(원) 11개, 학점 은행제

7) 국립국어원에서 주도한 조현성 외(2008)의 연구가 있다.

[표 1]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교원 양성 기관 현황(2015년 6월 기준)

구분	자격증 취득자 수	대학(원) 전공 학과	단기 양성 기관
2006년	868명	40곳	34곳
2007년	639명	-	-
2008년	842명	69곳	54곳
2009년	1,037명	-	-
2010년	2,157명	81곳	113곳
2011년	1,809명	95곳	130곳
2012년	2,336명	123곳	153곳
2013년	3,139명	145곳	159곳
2014년	4,566명	163곳	177곳
2015년	1,852명	176곳	185곳
누계	19,247명	176곳	185곳
비고	1급: 345명 2급: 12,335명 3급: 6,567명		

출처: 국립국어원 자료

23개이다. 이에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단기 양성 기관<sup>8)</sup>도 185곳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의 증가에 따라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해당 상위 법과 기관 유형에 따른 자격 취득 절차와 승급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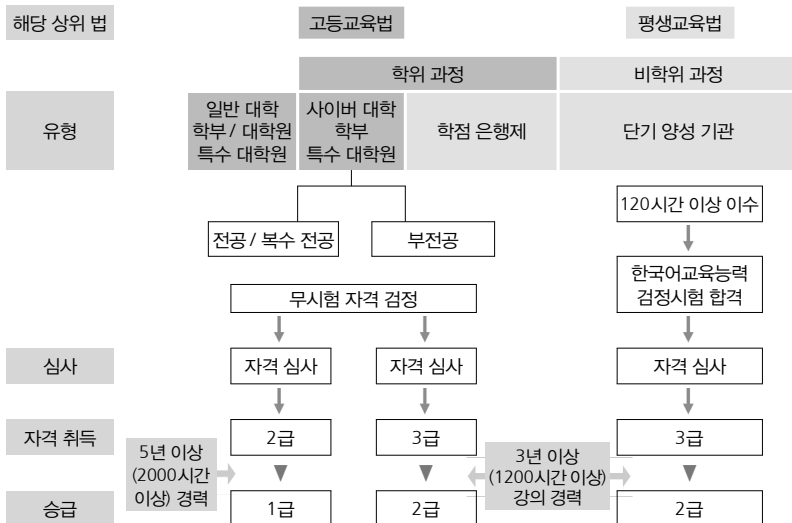
8)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민간, 공공 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120시간의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과정을 말한다(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단기 양성 기관”이라 함) (국립국어원, 《201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2013:5).

[표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 학위 과정(2015년 6월 기준)

구분	대학(원) 전공 학과					단기 양성 기관
	총계	유형별 과정 수				
		학부	대학원	사이버 대학(원)	학점 은행제	
2010년	81곳	16곳	54곳	5곳	6곳	113곳
2011년	95곳	17곳	65곳	6곳	7곳	130곳
2012년	123곳	23곳	80곳	8곳	12곳	153곳
2013년	145곳	30곳	88곳	9곳	18곳	159곳
2014년	162곳	35곳	96곳	10곳	22곳	177곳
2015년	176곳	40곳	102곳	11곳	23곳	185곳
누계	176곳	40곳	102곳	11곳	23곳	185곳

출처: 국립국어원 자료

[그림 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상위 법, 유형에 따른 자격 취득 절차 및 승급



### 3.1.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의 유형

#### ①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에 의한 구분

우선 기관 유형 혹은 과정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위 과정은 일반 대학 학부/대학원, 특수 대학원, 사이버 대학 학부/특수 대학원, 학점 은행제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비학위 과정은 단기 양성 기관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학위 과정은 시험 과정 없이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여 해당 급의 자격을 부여한다. 비학위 과정은 대학 부설 단기 양성 기관에서 120 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심사 과정을 거쳐 3급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시험(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응시 절차의 유무에 있다.

#### ②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구분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의 구분은 해당 상위 법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일반 대학 학부/대학원, 특수 대학원과 사이버 대학 학부, 사이버 대학 특수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기관 유형이며, 학위 과정의 학점 은행제와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단기 양성 기관의 과정은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는 기관 유형이다. 적용되는 해당 상위 법에 의한 구분에서 특이한 유형이 ‘학점 은행제’인데, 이것은 학위 과정이지만 고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학점 은행제는 다른 학위 과정과 달리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과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과목만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세한 문제점은 다음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즉 자격 심사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다.



### 3.1.2.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자격 심사<sup>9)</sup>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즉 심사 절차와 방법은 현재 2010년 제정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과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을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 심사에 관련되는 일반 기준은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sup>10)</sup> 등이다. 또한 학위 교육 과정이 해당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전공 혹은 학과로 개설되어야 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학부)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필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개인 자격 심사 시 기관의 교육 과정 및 교과목 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하므로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은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과 개설 교과목 등이 인정을 받은 상태라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9) 이에 관련되는 내용은 ≪2013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였다.

10)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제13조 제1항 관련)(국립국어원, ≪2013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2013:10).

영역	대학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전공/복수 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3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교육 과정과 개설 교과목들이 인정을 받기만 하면 개인 심사 신청자가 취득한 학점 및 교과목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3.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

윤소영 외(2011:3~4)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문제들은 첫째,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과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문제, 둘째,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셋째, 설립된 비학위 과정 운영 기관의 관리 및 평가에 대한 부분, 넷째,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인력 활용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자격 심사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sup>11)</sup>

#### 3.2.1.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 절차'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취득) 방법, 즉 심사 절차는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예비 교원이 수강한 교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째, 교과목의 운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의 절차상 각 유형

---

11)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관련 부분은 이 글의 지면 관계상 별도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자격 심사 절차와 방법의 측면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

별 교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출된 강의 계획서는 모범 답안처럼 작성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 교육 기관의 강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지식적인 측면 못지않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도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은 실제 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확보되기 어렵다. 특히 5명 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 실습’ 관련 과목의 운영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의 심사 과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assessment) 절차 없이 신청자의 취득 학점 및 교과목 중심으로 심사하는 원칙은 학위 과정 모든 유형에 적용된다. 이는 ‘학점 은행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점 은행제’는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일반 학위 과정과 달리 입법의 취지가 다른 평생교육법을 상위 법으로 하고 있는 학위 과정이다. ‘학점 은행제’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만 운영 방식이나 관리 형태가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대학(원) 등의 학위 과정과 다르다. 특정 학위 과정의 경우 해당 학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들을 기간에 관계 없이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평생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관리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은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등 교육 기관(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평생 교육 기관을 통해 ‘학점 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똑같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은행

행제를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3.2.2. 승급 심사 기준의 문제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후 2010년 개정 <국어기본법>에서 승급 심사 기준에 대해 2급 자격자가 1급으로 승급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원 2급은 학위 과정에서 한국어 교원 3급을 취득하고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1,200시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을 경우와 비학위 과정에서 3급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000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을 승급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승급 요건의 강화는 2005년 시행령 이후 2010년 개정 시행령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누적된 경력 시간이 교육 능력에서 한 단계 향상된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인가 승급을 위한 요건을 필수로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검증 등 승급 취득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 4. 개선 방안

위에서 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제안하려는 것은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기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다.

### 4.1. 기관 및 교육 과정 인증제 도입

지금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과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신청자들을 현재의 제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자격 심사 형태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를 전격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해당 교육 기관에 개설된 과정을 심사하고 개설 전공(학과)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를 좀 더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중등 교사 양성 기관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정원을 승인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로써 해당 기관에 적절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기관을 인증하고 그 기관에 자격 취득의 정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양성 기관 유형별 인증 평가의 탄력적 적용 등 양성 기관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선도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 4.2 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방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제시된 과목의 영역 중 5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 실습’ 운영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은 우리나라 중등 교사 자격 취득 과정과 비교할 때 실습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등 교사 자격 취득의 ‘교육 실습’은 한 달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어 교육 실습’은 한 과목으로 한 학기(32~48시간) 운영되고 있다. 그것도 실습의 기회는 8~10시간 참관과 1~2시간의 실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도 매우 양호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고 실습 현장 없이 ‘한국어 교육 실습’이 운영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비학위 과정은 부설(혹은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 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전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실습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기관을 지정할 때는 기관에서 정규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감액의 혜택을 주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예비 교원(실습 학생)이 운영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공지하여 별도의 한국어 교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정 기관에는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실습 교원이 있어야 하며,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습 과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여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4.3. 교원 재교육 방안

지금의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교원 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승급에 관련되는 부분은 양성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 혹은 재교육에 해당한다. 현장의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내에 한국어 교원의 재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이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혜택으로 승급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연수는 재외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어 왔다. 물론 해외 한국어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관리와 지원 측면에서 재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양성, 자격 부여, 질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승급 조건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 시간의 단순 누적보다는 일정 등급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원이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3), 《2013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 김덕신(2012), 한국어 교원 자격 승급자 연수에 대한 제언, 《언어학연구》 23, 한국중원언어학회, 13~30.
- 김정숙(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1권 3호, 국립국어원, 41~58.
- 김한빛나리(2011), 한국어 교원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송향근(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권 3호, 국립국어원, 27~39.
- 송향근(2012)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5, 민족어문학회, 53~75.
- 윤소영·조현성·이미혜·최은규(201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상현(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조태린(2012),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개선, 《언어와 문화》 8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75~293.
- 조현성·박영정·홍기원(2008),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지금 이 사람

—  
지역의 국어 문화를 이끄는  
국어문화원

박용식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기획부장을 만나다

—



답변자: 박용식(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기획부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권창섭(홍익대학교 강사)

때: 2015. 7. 20.

곳: 경상대학교 박용식 교수 연구실(진주)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만든 여러 공문서를 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몇몇 사람들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공문서의 목적이 행정 조직과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있는 것이라면, 이런 어려운 공문서는 시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공문서들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취지에는 이같이 이해하기 힘든 공문서를 우리말로 바르고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2005년에 제정, 시행된 <국어기본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국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국어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동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국어문화원이 해 온 일은 어떤 것들이며 어떤 과제들을 앞두고 있을까?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용식 기획부장을 만나 <국어기본법>과 국어문화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들어 보았다.

## ‘국어문화센터’에서 ‘국어문화원’으로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용식** 네. 저도 반갑습니다.

**권창섭** 우선 국어문화원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떤 배경에서 ‘국어문화원’이란 기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박용식** 국어문화원의 설립 근거는 <국어기본법>입니다. <국어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관이 ‘국어문화원’이라 할 수 있죠.

**권창섭** 〈국어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으니 국어문화원의 출발도 2005년으로 볼 수 있나요?

**박용식** 처음에는 ‘국어문화원’이란 이름이 아니라 ‘국어문화센터’였습니다.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대학들에 국어문화센터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권창섭** 그럼 지정 대학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대학에서 신청을 했나요?

**박용식** 〈국어기본법〉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우리 경상대학교에서는 5월부터 국어문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자마자 국어문화센터 지정 신청을 했고 당시 문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사무실, 누리집, 상근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상근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창섭** 그렇다면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경상남도를 대표해 지정된 것이겠네요?

**박용식** 그렇습니다. 국어문화센터로 설립되었다가 2008년도에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어문화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어문화원은 2009년도에 경상대학교 내부의 부속 기관으로도 승격되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 내부에 여러 연구 기관이 난립하고 있던 것을 정리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하나 더 설립하겠다고 하니 학교 측에서는 그리 달가워하진 않

았죠. 공간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재정 면에서 도움이 되는 기관도 아닌 것 같고……. (웃음) 실무 직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내 국제어학원의 부속 기관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왕좌왕했던 것이지요.

관(官)과의 협력도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도청(道廳) 측과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서 도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청에 들어가 보면 저희 존재를 모를뿐더러 관련된 일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겠네요.

**권창섭** 정말 힘든 초기 과정을 거치셨군요. 초대 원장은 누구셨나요?

**박용식** 처음엔 ‘월’이 아니라 ‘센터’였으니 ‘센터장’이겠죠. 국어교육과 김용석 교수께서 초대 센터장이었고 이후 ‘월’이 되면서 원장이 되셨습니다. 그 후 국어국문학과 황병순 교수께서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국어국문학과 임규홍 교수께서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 지역의 국어 문화 거점 역할 톡톡히 해

**권창섭** 현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박용식** 크게 연구 사업, 교육 관련 사업, 국어 상담, 국어 관련 행사의 기획과 개최, 언어 환경 바로잡기 사업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어 보존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주 지역을 대상으로 의생활 문화, 제례와 혼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을 채록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는 작업입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경남 지역 문화재 안내판의 정비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찾아가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적은 안내판이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내판의 문구들을 읽어 보면 아주 어려워요. 역사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아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바로잡는 작업을 했습니다.

**권창섭** 그럼 현재 경남 지역의 문화재 안내문들은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바로잡은 대로 되어 있습니까?

**박용식** 아뇨.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만드는 것들은 저희 손을 거쳐서 나가게 되지요. 경상남도 소재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은 안내 문구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안내판을 새것으로 바꿀 때 이것을 쓰면 됩니다. 이런 지역 콘텐츠를 기록하고, 지역의 언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이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입니다. 우리 국어문화원의 가장 특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권창섭** 국어 상담 업무란 주로 어떤 일을 말하나요?

**박용식** 초창기에 ‘국어상담소’라고 부르기도 했을 때 주로 하던 업무이지요. 국립국어원에 ‘가나다 전화’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나다 전화’와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나다 전화’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 쪽으로 건너오는 사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경남 지역어에 대한 문의가 그렇습니다. 지역어와 방언을 포함하여 국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권창섭** 문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용식** 1년 기준으로 많으면 100여 건 정도, 적을 때는 몇 십 건 정도 됩니다. 전화 문의와 누리집을 통한 문의를 합한 수입입니다.

**권창섭** 교정이나 운문 같은 일들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 출판물이나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등의 교정과 운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업무(국어 상담, 교정·운문)가 국어문화원의 가장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언중이 국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국어문화원의 기초 목적이니까요.

**권창섭** 교육 관련 사업은 주로 어떤 곳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박용식**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가 대표적인 교육 관련 사업인데 관공서, 공기업, 산업체 등 다양한 곳을 찾아갑니다. 군대나 병원도 가고, 저는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간 적도 있습니다. 주로 어문 규범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욱 다양한 곳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주로 군대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웃음) 또한 소외 계층을 위한 국어 교육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참여해 국어나 언어생활에 대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창섭** 청소년들을 위한 국어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역시 언어 순화나 어문 규범과 관련된 것인가요?

**박용식** 청소년의 언어생활을 생각하면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방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는 지역어를 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표준어나 서울말을 배우고 싶어하지요. 지역어, 즉 방언을 쓰는 것에 대해, 뭐랄까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가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자기 언어, 자기 지역어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 정도입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 안의 언어 충돌은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학교 공교육에서 말아야 할 몫이긴 하죠.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을 공교육에서 해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이지요. 저는 진주 인근 여러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곤 하는데 자신의 모어, 자신의 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려 애쓰고 있죠.

**권창섭**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용식**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 사실 관심은 덜합니다. 하지만 강호동 씨 같은 유명 연예인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기도 하죠.

**권창섭** 저도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고민들을 토로하나요?

**박용식** 직접 듣기보다는 학생들의 작문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 서울에 놀러 갔어요.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놀고 출구로 나와야 하는데 출구를 못 찾았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될 것을 물어보질 못했대요. 사투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말, 그리고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말도 소중하고 중요하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든 것이고, 얼른 표준어나 서울말로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표준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권창섭** 사실 언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문화와 더 많

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박용식** 단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짐으로만.

**권창섭** 요즘은 가사에 경상도 사투리를 쓴 대중가요도 있으니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박용식** 네. 최근에 이 지역 방송사에서 만든 〈사투리의 눈물〉이라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거기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가수 강산에 씨도 경상도 방언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언이란 것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창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상이 다양하겠지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도 국어문화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박용식** 네.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크게 세 영역입니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그 하나이고, 외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하지요.

**권창섭** 행사 관련 사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기획, 진행해 온 행사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박용식**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상 국어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문 규범을 포함하여 여러 국어 능력을 평가해서 시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발표하게 하고 우수자를 시상하였죠. 이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도록, 일반부와 학생부를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주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요, 568돌 한글날을 맞아



근 한 달 동안 여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옛 생활 속의 한글’이라고 해서 경상대학교에 소장 중인 한글 고문헌을 일반인들에게 전시하였습니다. 주로 당대 생활상이 반영된 내용의 고문헌을 고르고, 또 해설도 제공해 일반인들이 옛 한글과 생활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지요.

반대로 ‘현대 생활 속의 한글’이란 제목으로 다양한 한글 사진을 공모하여 그 당선작들을 전시했습니다. 사진들의 공모 내용은 상표나 상호, 메뉴판 등 생활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한글의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도 간단하게 적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선된 작품들을 진주박물관 야외에 전시하였지요.

‘나만의 한글 가방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글 도안이 인쇄된 친환경 가방(에코백)에 파스텔과 펜 등으로 스스로 가방을 꾸며 보도록 하였지요. 자신이 만든 가방을 사진 찍어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면 기념품도 주었고요. 250여 명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권창섭** 한글 주간 행사는 말씀만 들어도 노력이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박용식** 한글 주간 행사 전에 이루어진 국어 경시대회와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도 사실은 한글날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개최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9, 10월 두 달은 모든 직원이 초주검 상태죠. (웃음)

**권창섭** 국어책임관 공동 연수회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식** 해마다 치르는 행사입니다. 시·군 공공 기관의 국어책임관 혹은 국어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국어문화원과 협력하고, 국어책임관의 업무 능력 향상을 꾀하는 자리이죠.

## 함께 소통하기 위한 공공 언어 개선에도 앞장서

**권창섭** 공공 언어를 개선하는 작업, 행정 용어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일들은 관(官)과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공 기관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박용식** 기관 쪽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관계가 꺾끄러워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괴로운 사람이 보도 자료를 쓰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권창섭** 어떤 갈등이죠?

**박용식**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자신들은 해당 용어를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써 왔는데 왜 굳이 바꾸라고 하느냐 등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것을 알고 조율이 가능한 지점들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국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행정 기관 쪽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하게 되었지요. 자신들의 언어 사용을 누군가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어기본법>이 의무 조항이 아니다 보니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 자치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권창섭** 지방 자치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까?

**박용식** 고성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고성군 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군수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올바르게 써야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

한 것이지요.

**권창섭** 공문서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공문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향한 글 역시 제대로 쓸 수 있게 확장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박용식** 네. 현수막이나 홍보문 등의 문구도 공문서를 바로 쓸 수 있을 때 더 선명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 책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안내 책자를 배포하기 전에 디지털 파일로 우리에게 건네주면 검토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무척 많아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을 잘 못 하나 봐요.

**권창섭** 규범성이라는 측면과 언어의 실제 사용이라는 측면이 많이 충돌할 것 같네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언어를 개선하고 또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간섭한다고 느낄 테니까요.

**박용식** 말이 나왔으니 순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처럼 별로 힘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 봤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웃음)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적절하게 느껴져야 할 텐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래어나 로마자가 많이 들어가면 멋있어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어 그에 대해 지적하면 표정들이 좋지 않죠. 자신들은 계속 써 왔던 어휘니까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하지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규범이라고, 적어도 규범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규범이 무엇인지는 알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권창섭**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용식** 언론에서 많이 써 주면 됩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웰빙’ 대신에 ‘참살이’, ‘무빙워크’ 대신에 ‘자동걸’을 써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문제 발생 지점도 있지요.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개선된 공공 언어나 순화어를 사용하더라도 상급자가 그걸 싫어하면 도루묵이 됩니다. 공무원 구조가 관료제이다 보니 결국에는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죠. 국립국어원장님께서 이 글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과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행정자치부 등이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나 관에 권유해도 큰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의 권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사람, 즉 의사결정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말들의 순화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외래어·외국어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미리 순화어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용되는 말들에 대해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통용되기 전에 미리 순화어를 제시해야죠. 물론 통용된 이후에도 성공한 사례들은 있지요. ‘누리꾼’이나 ‘덧글’이 예가 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런 사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권창섭** 저는 순화어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일 자체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종 제시된 순화어들이 과연 적절한 대체 용어가 될 만한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선 예에서 ‘웰빙’을 ‘참살이’로 순화한 것은 그럴듯하지만 ‘레이싱걸’을 ‘행사 빛냄이’라든가 ‘웹툰’을 ‘누리터 쪽그림’으로 순화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선 예는 기존 어휘의 뜻을 순화어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뒤의 예는 두 음절의 외래어를 여섯 음절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박용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판단과 선택이 어차피 언중의 몫

이러면 일단 그것을 전제로 통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언중이 취사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순화어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측에서도 언중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국가가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작가의 작품 활동이나 언론에서 순화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겠죠. 국가에서 강요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순화어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민이 많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많습니다.

## 실질적인 성과 위해 더 많은 지원 필요

**권창섭** 기존에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 외에 2015년에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혹은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박용식** 한글 주간 행사 가운데 학생이나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올해 한글 주간 행사에는 스스로 참여해 함께 만들어 보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입체 이야기 책(팝업북) 만들기 체험’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권창섭**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업으로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지요?

**박용식** 지역어 보존 사업의 하나로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지역어 전래 동화’라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은 이 지역 방언을 잘 모르잖아요. 그 세대들에게 방언과 지역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지역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어 전래 동화를 녹음하여 시디(CD)로 만들고, 해설서도 곁들일 겁니다.

**권창섭** 흥미로운 사업이네요. 시디 외에 다른 매체로도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박용식** 그리고 경상남도와 함께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꿈이’는 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 동아리로, 경상남도의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년 광역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청소년 언어 바로 쓰기, 공공 언어 바로 쓰기, 토박이말 알리기’ 등을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경남의 곳곳으로 홍보 활동을 나가다 보니 무척 바쁘네요. 보람 있는 일인 만큼 품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권창섭**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어문화원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 지금까지 하던 말의 연장선에 있는 말 같은데요, 지역 박물관 처럼 지역 국어문화원에도 국립국어원 소속의 정규직 상근자가 한 명 정도 배정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구원들의 열정에만 기대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사실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에게 국어문화원 일을 맡기는 것이 상당히 미안합니다. 동기 부여를 하려면 일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도 성과는 내야 하고 그러면 일은 또 힘들어지고……. 실적도 실적대로 중요하지만 실제 각 지역 국어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들의 처우나 상황도 고려해서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국어문화원의 일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현재 각 국어문화원에 할당된 예산으로는 상근자들에게 최저 시급도 못 주거든요.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로 국어문화원으로 선정된 것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안함만 커집니다.

**권창섭** 게다가 사업이 이뤄지는 기간만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 네. 보통 사업 기간이 10개월이고 그 10개월 동안만 보수가 지급되지요. 그런데 그 10개월 외에는 일을 안 할까요? 계속합니다. 기관의 성격상 상담 업무나 연구, 교육은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섭** 열악한 현실이 여러 협력 행정 기관에 잘 알려져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박용식** 국립국어원-행정 부처-국어문화원 사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겠지요.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각 대학의 국어문화원들은 연구 사업도 열심히 해 보고 싶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좋았으면 하는 소망이 우선이고요, 국립국어원이나 행정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 기관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것이니 국민들에게 보여 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행사가 활발해야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보통 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력이나 예산은 부족한 것이 국어문화원의 실정이지요. 그런데도 국어문화원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이마저도 없으니까 아쉬워하지요. 대략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은 잘 해야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언어와 국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신경을 더 써 주었으면 해요.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건설 사업 등에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규모에 비하면 언어와 국어를 위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요구되는 비용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액수이거든요? 국립국어원이나 정부에서 좀 더 국어문화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권창섭** 오랜 시간 국어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들과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국어문화원의 사정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네. 감사합니다.



문학 속 우리말

# 이야기와 노래에 나타난 언어유희

우리말 가지고 놀기

김영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럭아, 왜 우럭?”

“이 참외 죽어 볼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반하나?”

“우리 사이다 먹은 사이다.”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차이나 가서 고백하면 차이나?”

“시름시름 앓다가 씨름 선수 되겠네.”

말장난이 꽤나 인기다. 인터넷 검색창에 ‘말장난’이나 ‘언어 개그’를 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예들이 올라온다. 말장난은 꽤 오래전부터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활용하는 소재 중 하나였다. 요사이엔 이런 말장난을 즐기는 사람들을 ‘낯은 유머’를 즐기는 사람들, 혹은 ‘철 지난 개그’를 즐기는 사람들로 조롱하기도 하지만, 이 조롱 속에는 여전히 말장난의 재미를 즐기는 흥취의 기운이 있다.

말장난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언어의 사용 현장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 말장난에 관심이 많은 것은 한국어 고유의 특징 때문이다. 말장난은 주로 소리가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로 언어를 재배치해 새로운 통사적 표현을 이끌어 냄으로써 뜻밖의 의미 효과를 이끌어 내거나, 유사한 소리(음운이나 음절)를 반복 배치해 소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언어의 통사적 구도를 관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뒤흔들어 의도적으로 오해나 실수를 자아내는 것도 말장난 가운데 하나이다. 말장난에서 말의 뜻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 효과일 뿐 말장난의 핵심은 말의 소리다. 말의 소리를 장난스럽게 가지고 노는 것이다. 한국어에 유독 말장난이 많은 것은 표음 문자인 한글이나 말소리에 민감한 우리말의 특징이 언어유희의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언어유희, 곧 말장난을 즐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한국어 입말의 흥취와 말소리의 다양한 자질을 점차 잃어 가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놀잇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 불렀던 민요 〈나무타령〉에는 이처럼 말의 소리를 가지고 노는 말놀이의 재미가 한껏 묻어난다.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옷나무  
 짓지꺼지 꽃꺼지  
 난달래미 봉숭애  
 우리 집에 와여 바라  
 대추 찰밥 해여 놓고  
 니 하나이 줄 쭈 아나  
 - 〈나무타령 1(가자 가자 감나무)〉

너하구 나하구 살구나무  
방귀 뽕뽕 뽕나무  
물에 퐁퐁 퐁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방귀 쌀쌀 싸리나무  
십 리 절반 오리나무  
하늘 중천 구름나무  
달 가운데 예수나무  
땅땅땅땅 땅버들나무  
구십구에 백자나무  
열아홉에 쉬인나무  
처녀 애기 자장나무  
요실고실 실버들나무  
따끈따끈 가지나무  
밑구녕에 쭈나무  
- 〈나무타령 2〉

싸리나무야 싸워라 싸워라  
참나무야 참아라 참아라  
대나무야 대애끼  
소나무야 솔솔 피해라  
밤나무야 가지 많다 찢릴라  
소나무 속으로 솔솔 피해라  
- 〈나무타령 3〉

따끔따끔 가시나무  
열아홉에 스무나무  
아흔아홉 백경나무  
십 리 절반 오리나무  
일 년 사철 사시나무  
앵드러졌다 앵두나무  
실 뽑는다 실버들나무  
- 〈나무타령 4〉<sup>1)</sup>

반복되는 소리가 만들어 내는 리듬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말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더구나 말장난은 소리의 단순한 반복에 머무르지 않고 재배치된 언어가 빚어내는 표현의 새로움을 통해 언어의 맛깔스러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면서 관습 너머에 존재하던 언어의 다른 가능성을 발견케 한다. 말은 이처럼 다른 맥락 속에 놓일 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말놀이의 재미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때로 사회적 의식이나 계층 감각 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고전 작품 가운데 말장난의 모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는 〈봉산탈춤〉에서 양반을 골려 먹는 말뚝이의 대사이다. 이 말장난은 소리가 같은 말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새로운 맥락을 보여 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양반의 권위와 위선적 고결함을 풍자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

1) 〈나무타령 1~4〉는 모두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국립민속박물관 2013:29, 119)에서 인용함.

말뚝이: 하아 이 양반 어찌 듣소. 문안을 들이고 들이고 하니까 마내  
님이 술상을 차리는데 벽장문 열고 목이 길다 황새병, 목이 짧다 자  
라병, 강국주 이강주며, 우이쉬기 부란데며 금천대(金千代)를 내여  
놓자 앵무잔을 마내님이 친히 들어 잔 가득이 술을 부어 한 잔 두 잔  
일이삼배 마신 후에 안주를 내여 놓는데 대양푼에 갈비찜 소양푼에  
저육초 고추 저린 김치 문어 점복 다 버리고 작년 팔월에 샌님택에  
서 등산 갔다 남아온 좃대갱이 하나 줍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아 이 양반 어찌 듣소. 등산 갔다 남아온 어두일미(魚頭一  
味)라고 하면서 조기 대갱이 하나 줍디다 그리하였소.

생원들: (합창) 조기 대갱이라네에. (하며 굿거리에 같이 어울려 춤  
춘다.)

생원: 이 놈 말뚝아. (음악과 춤 그친다.)

말뚝이: 예예. 아이 재미를 붙을 양반인지 좃반인지 허리 꺾어 절반  
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말뚝아, 꼴뚝아, 발가  
운데 쇠뚝아, 오육일 밀뚝아, 잘대둑에 메뚝아, 부러진 다리 절뚝아,  
호두엿 장사 오는데 하나비 찾듯 왜 이리 찾소.<sup>2)</sup>

말뚝이와 생원의 대화는 오해와 오인의 어긋난 대화로 끝없이 이어  
지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말장난으로 이루어진다. 말뚝이는 소리의  
유사함으로 양반의 권위를 대변하는 단어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말들을 끌어내 배치하고, 이를 듣고 나무라려는 양반에게 “당신이 잘못  
들었다.” 말한다. 이와 같은 동음이의(同音異義)의 말들은 사슬처럼

---

2) 심우성 편저,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비평사, 1975:237.

연결되어 긴 말꼬리를 만드는데, 이 말의 사슬이 만들어 내는 오해(誤解)와 정해(正解)의 엇갈림이 양반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신을 향한 공격의 말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만든다. 사실상 양반은 제대로 알아들었으나 말뚝이에게 ‘오해’를 했다고 공격받는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말뚝이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양반의 꼴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

〈봉산탈춤〉의 말장난은 현실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말놀이의 힘과 효과를 대변한다. 현실에서 권위와 고결함을 자랑하는 양반은 이 말장난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며 비천한 존재로 추락한다. 반대로 양반의 ‘정해(正解)’를 ‘오해(誤解)’로 만들며 양반을 압도하는 말뚝이의 힘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되, 오직 극 속에서 말놀이로 구현되는 것이다. 말장난을 이끌어 가는 것은 오직 말뚝이이며 양반 생원은 말뚝이의 놀이에 이리저리 휘둘린다. 말을 가지고 노는 말뚝이가 실제로 가지고 노는 것은 양반이다. 현실에서 소통 불능, 혹은 소통 불가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양반의 권위지만 극 속에서 소통 불가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말장난으로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의 힘이다. 의도된 오해와 관계의 역전 속에서 말장난은 단순한 언어유희를 넘어선 또 다른 쾌감을 제공한다. 이 말놀이에겐 현실의 질서와 관습, 관성의 답답함을 조롱하고 질타하는 공격과 배설의 카타르시스가 있다.

〈나무타령〉에서 말놀이를 이끌어 가는 열쇠는 나무의 이름에 있다. 〈봉산탈춤〉에서도 말뚝이가 말장난의 놀릿감으로 삼아 공격하는 가장 주된 대상은 ‘양반’이라는 호칭, 곧 이름이다. 말장난에는 이처럼 이름이 주요 놀릿감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많다. 구전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말장난을 만들고 이 말장난이 서사 전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 〈특재 있는 8형제〉

특별한 능력을 지닌 8형제가 있었다. 그중 만리보기천리보기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 그 능력을 이용해 마음에 드는 색시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이 색시는 이미 결혼해 신랑과 신행길에 나섰다가 신랑이 오줌을 누는 새 잠깐 떨어진 것이었다. 8형제의 집은 몹시 가난했는데 진동만둥이가 부잣집에 가서 금은보화를 가져왔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관청에서 진동만둥이를 잡아갔는데 만리보기천리보기가 이를 내다보고 자른동만둥이를 옥에 대신 들여보내려 하였다. 여니딸깍이가 옥에서 손톱으로 쇠를 자르고 진동만둥이 대신 자른동만둥이를 옥에 들여보냈다. 관청에서 다음 날 죄인의 목을 베는데 아무리 베어도 머리가 다시 나왔다. 만리보기천리보기는 여니딸깍이와 줄었다늘었다를 보내 자른동만둥이를 꺼내고 줄었다늘었다를 대신 옥에 들여보냈다. 관청에서 다음 날 죄인을 갈아 죽이려 했는데 줄었다늘었다가 계속 되살아났다. 만리보기천리보기의 형제들은 다시 줄었다늘었다를 감옥에서 빼내고 그 대신에 올려치기내려치기를 옥에 넣었다. 다음날 관에서 죄인을 벼랑에서 굴렸으나 죽지 않았다. 형제들이 옥에 든 이를 다시 더우니차니로 바꿔치기하자 관에서 이번에는 끓는 콩기름에 죄인을 넣어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하고 형제들은 다시 옥에 든 이를 끓으니얇으니로 바꿔치기하였다. 관에서 죄인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관아의 사또가 ‘물이 얼마나 얇길래 그런가’ 싶어 들어갔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해서 8형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sup>3)</sup>

3)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편》 1권 평민사, 1991(3판):84~86에 실린 이야기

이야기 속 형제들의 이름은 모두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표현하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리보기천리보기’는 먼 곳의 일과 앞일을 내다보고, ‘진동만동’은 짊어진 짐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른동만동’은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살아나는 재생력을 지녔다. ‘여니딸깍이’는 잠긴 것은 무엇이든 열 수 있고, ‘줄었다늘었다’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며 ‘올려치기내려치기’는 어디서든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더우니차니’는 뜨겁거나 찬 것에 구애되지 않으며, ‘깊으니얕으니’는 물의 깊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문제의 설정과 해결이 모두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실마리로 풀려나간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을까 싶지만 말장난 같은 이 이름이 표현하는 능력들 덕분에 여덟 형제는 모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들 모두의 이름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지점에 있는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우리말로 구성되어 있다. 한계 너머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아무리 비천한 지위에 있어도 신분의 상하에 구애됨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자와 관인들이다. 특히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의 능력과 행동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들의 이름처럼 끝없이 이들을 처벌하려는 관청의 의지를 좌절시키며 관인들을 조롱한다. 형제들의 이름은 사건과 더불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이들이 만들어 낸 힘의 연쇄가 결국 관청의 최고 대표자인 사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사또가 이 비천한 형제들을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사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다.



### 〈무식쟁이의 승리〉

옛날에 유식한 사람 두 명과 무식한 사람 한 명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마침 메추리 한 마리가 지나가 이들이 힘을 합쳐 메추리를 잡았다. 잡은 메추리를 구워 먹으려니 메추리가 너무 작아 먹을 것이 없었다. 세 사람은 셋이 나눠 먹으면 모두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으니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유식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누구든지 ‘구’자를 세 번 써서 말을 먼저 만든 사람이 메추리를 먹자고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여 세 사람이 각자 머리를 써서 말을 만들고 있는데 무식쟁이가 먼저 고기를 집어 먹으며 “글이구 뭐구 먹구 보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무식쟁이가 내기에서 이기게 되었다.<sup>4)</sup>

유식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무식한 한 사람을 골탕 먹이려 했지만 결국 말보다 행동이 앞선 무식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장난 같은 한마디가 승부를 결정짓고 말았다. 이 말장난은 ‘유식’과 ‘무식’의 경계를 뒤엎으며 이른바 ‘식(識)’, 곧 ‘앎’의 허위와 무능을 조롱한다. 물론 이때의 ‘앎’은 추상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앎’, 곧 누군가에게 내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앎’이다. 이 가식과 허위의 가면이 무식쟁이의 말장난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말을 가지고 노는 말장난은 말의 두 핵심 자질인 ‘소리’와 ‘뜻’을 말미암아 비롯된다. 이 장난은 소리의 쾌감을 극대화하고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관습과 규범을 벗어난 지점에서 일탈적 의미

---

4)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편》1권 평민사, 1991(3판):225에 실린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다.

를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의 토대를 구축한다. 익숙하고 길들여진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맥락 속에 말들을 배열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거나 조롱하는 역전적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창조는 언제나 기존의 관습과 규범을 벗어난 일탈적 놀이에서 시작된다. 말장난이 만들어 내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다.

《삼국유사》에 “뭇사람의 말은 쇠도 녹일 수 있다(衆口鑠金).”<sup>5)</sup>는 구절이 나온다. 화용론의 이론가 오스틴(J. L. Austin)이 지적한 대로 말은 언제나 어떤 효과를 만들기 마련이며 이 말이 만들어 내는 효과는 표현의 층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언어적 표현의 경계를 넘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말의 경계를 넘어선 말들이 만들어 낸 창조는 언어의 창조를 넘어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향해 나아간다.

---

5)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제2 ‘수로부인’.

—  
122년에 걸쳐 펴낸 그립 형제의  
《독일어 사전》  
—

최경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1. 들어가며

독일 위키피디아에 ‘독일어 사전(Deutsches Wörterbuch)’을 검색어로 쳐 보면 그립 형제의 《독일어 사전(Deutsches Wörterbuch)》 항목이 바로 나온다. 사실 독일에는 ‘독일어 사전’이라 부를 수 있는 사전들이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캄페(Campe)》, 《잔더스(Sanders)》, 《두텐(Duden)》 등도 독문학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독일어 사전’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독일어 사전’이라고 하면 그립(Grimm)의 《독일어 사전》을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 그립 사전이 독일의 대표적 인 ‘독일어 사전’임을 말해 준다.

그립 형제의 사전은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독일어 사전’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그립 형제가 만들기 시작했으나 끝을 맺진 못했다. A부터 Z까지 모두 32권으로 엮은 사전은 무려 3만 3,812쪽에 이르며, 1852년부터 1960년, 즉 108년에 걸쳐 편찬되었다(Haß-Zumkehr 2001:119). 여기에 14년의 준비 기간을 합치면 《독일어 사

전》 편찬 작업은 12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제어는 40만~50만 개로 정확한 수치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표제어 서술에서 각 서술 담당자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로 서술해 표제어의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chmidt 1986:105). 《독일어 사전》에서 해당 표제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1971년에 《독일어 사전》의 33번째 책으로 출간된 출처 목록의 부록을 찾아보아야 한다.

122년 동안 지속된 편찬 기간으로 인해 사전의 콘셉트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독일어 사전》은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독일 분단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겪었으며, 분단으로 인해 사전 편찬소도 동베를린과 괴팅겐으로 각각 나누어졌다. 100명이 넘는 직원과 수많은 독어독문학 교수들이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문학 비평가 마르셀 라이히라니키(Marcel Reich-Ranicki)는 1999년 문고판 《독일어 사전》 광고에서 《독일어 사전》이 “독일어로 서술된 가장 흥미 있는 소설이며 가장 중요한 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사전의 편찬 역사와 서술 규모를 일별해 보면 누구나 쉽게 수긍할 것이다.

## 2. 《독일어 사전》의 편찬 배경과 출판 역사

### 2.1. 《독일어 사전》 성립의 사회적 배경

그림 형제가 《독일어 사전》을 편찬하게 된 배경은 ‘민족 사전’이란 아이디어를 나오게 만든 정치 사회적 분위기였다. 독일이 40여 개의 군소 국가로 나뉘어 있던, 일종의 연방 국가였기에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상징물이 중요했다. ‘민족 사전’이라 함은 예를 들면 독일 건국에 대

한 헤르만 기념비(1838~1875)와 1813년 해방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쾰커슐라흐트 기념비(1863~1913)와 같이 독일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했다. “우리 독일 민족이 언어 이외에 공통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도대체 가지고나 있는가!”라는 야코프 그림(Jakob Grimm, 1785~1863)의 탄식은 1840년대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었고, 독일 민족을 상징해 줄 언어 작품의 탄생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19세기는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유행했던 시기로, 세분하여 말하면 애국주의로 시작하여 소비니즘으로 끝나는 세기였다. 후기 낭만주의 이래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은 자신을 애국주의자라 칭했다. 애국주의자는 지역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소신을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1848년 혁명은 독일의 통일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혁명의 실패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에서 문화 참여로 전환하게 만들었으며, 독일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급진적 민주주의자이든 입헌적 자유주의자이든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주의자임을 자처했다.

이런 시대 배경에서 1830년부터 출판업자 카를 라이머(Karl Reimer)는 그림 형제에게 루터에서 괴테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어휘를 기재할 근대 고지 독일어(Neuhochdeutsch)<sup>1)</sup> 사전 편찬을 여러 번 제안한다. 괴팅겐 대학 교수로 사전 편찬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형제는 이 거창한 제안을 거듭 거절했다. 그러나 정치적 스캔들이 이런 상황을 급

---

1) 독일어사에서 독일어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네 단계, 즉 고대 고지 독일어(750~1050), 중세 고지 독일어(1050~1350), 초기 근대 고지 독일어(1350~1650), 근대 고지 독일어(1650~현재)로 나뉜다. ‘루터에서 괴테까지’는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의 문에 고시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1517년에서 현재까지를(괴테는 1832년에 죽음) 의미한다.

변시켰다. 그림 형제를 포함한 괴팅겐 대학 교수들이 1837년 11월 18일에 1833년 하노버의 새 군주인 아우구스트 2세가 너무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선언했던 헌법 실행을 요구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소위 ‘괴팅겐 7인’은 국가 위협적 성향을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그림 형제는 하노버 왕국에서 추방당했으며, 정치적 망명자로 이전 거주지였던 카셀로 돌아갔다. 이런 정치적 사건은 민족주의와 국제적인 연대감과 함께 그림 형제를 궁극적으로 당대 가장 유명한 독일인으로 만드는 동시에 무직자로 만들었다.

이때 라이머는 자신이 원하던 사전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는 계획을 다시 시도했다. 그는 고문헌학자인 모리츠 하우스프트와 함께 1838년 3월 3일에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 1786~1859)에게 자신의 제안을 다시 고려해 보고 야코프도 설득해 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그림 형제는 프로젝트의 엄청난 범위에 머뭇거렸지만, 라이머와 하우스프트가 4월 초 방문한 후 마침내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전 출판은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괴팅겐 사건 후에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던 독자적 학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형제는 1838년 10월에 바이트만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전인 1838년 8월 29일에 라이프치히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독일어 사전》의 광고가 실렸는데, “새로운 사전은 루터에서 괴테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가늠해 보거나 측정해 보지 못했던 우리 조국의 무한한 어휘를 포괄하고 있다.” (Kirkness 1980:69)는 내용이었다.

## 2.2. 그림 형제의 《독일어 사전》 편찬 과정

122년에 걸친 《독일어 사전》의 편찬 역사는 4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그림 형제가 괴팅겐 대학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전은 우선 6, 7권으로 계획되었고, 6년에서 10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전 편찬 작업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건강 악화, 1848년 혁명의 참여 등으로 야코프는 1849년 4월에야 비로소 첫 표제어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야코프가 ‘A’, ‘B’, ‘C’를 맡고 일을 느리게 하는 빌헬름이 ‘D’를 맡았다. 사전 편찬의 어려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야코프는 1850년 말에 게오르크 고트프리트 게르비누스(Georg Gottfried Gervinus)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인수 받은 대 사전이 납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시작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사전 작업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입니다(Ippel 1886:99).

1852년 3월 1일 바이트만 출판사에서 첫 번째 원고(‘A’에서 ‘Allverein’)를 광고한 소책자가 인쇄되었으며, 5월 1일에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14년 만에 최초의 원고가 완성되었다. 2년 후인 1854년 4월 13일 ‘A’에서 ‘Biermolke’까지의 표제어, 출처 목록, 머리말 등을 포함한 제1권이 마침내 출판되었다.

사전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처음에는 야코프와 출판사의 기대를 능가한 호평 일색이었다. ‘위대한 국민 작품’이라고까지 언급하는 호감을 가진 수많은 서평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판 1만 부가 모두 팔렸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톨릭 쪽에서 《독일어 사전》의 표제어 ‘Ablass(면죄부)’를 근거로 사전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성향을 비판했고, 칭찬 일색인 서평들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다니엘 잔더스와 루트비히 부름으로 대표되는 언어학자들의 혹평이 이어졌다. 그들은 소문자 표기, 관례적이지 않은 정서법, 안티크바<sup>2)</sup>로 인쇄된 문장, 라틴어 어휘 설명 등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을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다. 야코프 그림은 그들의 비판에 대해 사전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두 마리의 거미(심술쟁이)가 이런 어휘 정원의 잎사귀 위로 기어와서 자신들의 독을 풀었다(《독일어 사전》 1권:118단).

지칠 줄 모르고 야코프는 《독일어 사전》의 원고를 계속 작성해 나갔다. 그동안 빌헬름도 알파벳 ‘D’ 부분을 작성했고 1855년 3월 16일 첫 원고를 라이머와 결별한 후 홀로 출판사를 이끌고 있는 히르첼에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빌헬름의 서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야코프의 원고와 스타일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속도도 무척 느렸다. 빌헬름은 1859년 12월 16일 죽음을 맞이했을 즈음에야 비로소 ‘D’를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작업은 그동안 많이 쇠약해진 야코프의 차지였다. 그렇지만 그는 한 명의 보조원을 데리고 작업을 부지런히 계속해 나갔다. 사전 작업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코프와 출판업자도 이

---

2) 안티크바는 로마체를 의미하며, 당시 독일에서 독일어 문헌은 프락투어(고딕체)로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야코프는 1863년 9월 20일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때 그는 'Frucht' 항목까지 작업했다.

### 2.3. 그림 형제 사후의 《독일어 사전》 편찬 과정

야코프가 사망한 해에 “언젠가 사전을 계속 작업하는 계승자가 될 것임”(Kirkness 1980:261)을 예견했던 《독일어 사전》의 교정자 루돌프 힐데브란트(Rudolf Hildebrand, 1824~1894)와 카를 바이간트(Karl Weigand, 1804~1878)가 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갔다. 힐데브란트는 'K'를 저술했고, 바이간트는 야코프의 마지막 표제어 'Frucht'에서 시작하였는데, 그 위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다. 이것은 32권의 《독일어 사전》에서 단 하나뿐인 각주로 남게 되었다.

이 단어로 야코프 그림은 자신의 펜과는 유감스럽게도 영원히 이별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어진 알파벳의 끝까지 나의 작업이 되었다(바이간트, 《독일어 사전》 4권:259단).

1871년 독일 최초의 민족 국가 탄생은 사전이 지니고 있었던 상징적인 기능도 변화시켰다. 즉, 사전은 이제 더 이상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문화적인 '독일의 상징'이 되어야 했다. 힐데브란트와 바이간트는 모두 고등학교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곧 사전 작업에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그들을 교수로 임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로써 《독일어 사전》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 되었다. 할레에서 1867년에 개최된 문헌학자 회의에서 북독일연맹은 사전 편찬을 위한 보조금 지불을 약속했고, 비스마르크는 상원위원회에 상정된 《독일어 사전》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수상이 정신과

학 프로젝트에 비용을 조달하는 안을 승인한 유일한 사례였다. 비스마르크는 의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림의 《독일어 사전》은 의심의 여지없이 독일 지식인의 위대한 작품이며, 만약 이것이 미완성으로 머물러야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한탄할 일일 것입니다(북독일연맹 연방의회 회의 자료, 1868년 14호:2).

프로젝트는 1869년 연방 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1878년까지 정상적인 국가 보조금, 즉 황제의 기밀비로 충당되었다. 의회에서 인준이 나기 직전에 편찬 작업에 참여한 젊은 독문학자 모리츠 하이네(Moritz Heyne, 1837~1906)는 1867년 표제어 저술자로서 힐데브란트와 바이간트(1872년 그만두었다)를 도우며, 《독일어 사전》의 편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편찬자 중 하나가 되었다.

비범한 언어학적 능력으로 존경받았지만 비판에 아주 민감했던 힐데브란트는 드물지 않게 단행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표제어를 다수 저술하고, 게다가 아주 느리게 일을 진행했다. 구스타프 프라이타크는 여기에 대해 1884년 12월 25일에 하인리히 히르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를 비판하고 있다.

힐데브란트는 점점 놀라워지고 있으며, 그는 ‘Gott’까지 서술하기 위해서 여전히 공책 10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Gott’는 2권, ‘Gurke’는 반 권의 공책이 필요할 것입니다(Freytag 1902:254).

1908년에서 1930년까지의 세 번째 단계는 다방면으로 서술의 통일

성이 시도되었다. 출간 속도의 지체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용례를 보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연구자 그룹 단위로 작업해야 하며, 작업 기술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 《독일어 사전》 편찬의 총괄은 베를린에 있는 프로이센 학술원의 독일어위원회가 맡았다.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고 직원 수도 확충되었다. 괴팅겐에 편찬소도 설립되었다. 1908년에서 1913년까지 대략 200만 개의 새로운 용례가 아직 서술되지 않은 표제어를 위해 수집되었다. 3단계에서는 6번째, 17번째, 27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서술은 편찬 스타일 면에서 여전히 아주 달랐다. 모리츠 하이네, 마티아스 렉서(Matthias Lexer), 헤르만 분더리히(Hermann Wunderlich) 등이 주 저자였다.

네 번째 단계는 1930년 아르투어 휘브너(Arthur Hübner)의 조직 개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10년부터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으며, 표제어의 일관성 있는 구조를 사전 편찬의 콘셉트로 정하였다. 그는 표제어 서술의 시작 부분을 간결하게 하고 의미 부분은 일종의 서론 혹은 머리말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의미 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계적으로 서술되었고, 의미는 라틴어 등가어 대신에 독일어로 풀어 써서 설명되었다. 개별 의미들은 오늘날의 의미론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여러 관점으로 설명되었다. 예를 들면 특정 전치사를 대동한 동사의 관련 영역이나 사용이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1930년부터 서술은 비록 어형의 역사가 전면에 나올지라도 이전과 비교해 의미를 더 많이 설명하는 양식으로 변했다. 휘브너에 의해 이미 3단계부터 실행에 옮겨졌던 개혁은 이제 페터 디퍼스(Peter Diepers)에 의해 문서 형태로 정해지고 체계화되었다. 이로써 디퍼스는 《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한 지침을 작성한 최초

[표 1] 《독일어 사전》의 편찬 역사

	주요 저자	완성 어휘	전체 비율	서술 구간
1단계 (1838~1863)	그림 형제	27%	9%	A~Frucht
2단계 (1863~1908)	바이간트/ 힐데브란트	53%	43%	Frucht~gewirken / S~Stattlich / T~Todestag / V~Versitzen / W~Wallung
3단계 (1908~1930)	하이네, 분더리히, 렉서	8%	18%	Gewirken~Gezwang / Greander~Grün / Stattlich~Stein / Stob~Strahlen / Todestanz~Tort / U~Überweisen / Un~Unversagbar / Versetzen~Verwechseln / Vesche~Volksgefühl / Wallung~Weinlese / Wilb~Windschatten / Z~Zeiche / Zobel~zurecht
4단계 (1930~1960)	휘브너, 디퍼스	12%	30%	Gezwang~Gräzist / Grün~Gymnastik / Stein~sitzig / Strahlen~Szische / Törtchen~Tz / Überweisen~umzwingen / Unversagend~Uzvogel / Verwechseln~verzwungen / Volkgefüllt~vulkanisch / Weinlese~Wiking / Windschällig~Ysop / Zeichen~Zmasche / Zurecht~zypressenzweig

의 편찬자가 되었다.

《독일어 사전》 편찬소는 2차 세계 대전 중에도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동·서독 분단 시대에 괴팅겐과 동베를린으로 각각 나누어진 편찬소에서 일했던 독일독문학자들은 ‘G’, ‘S’, ‘W’ 부분을 협력하여 완성했다. 분단이라는 정치적 대결 구도에도 1961년 1월에 《독일어 사전》의 마지막 분책인 380번째 분책(‘Widrig’에서 ‘Wiking’)이 출간될 수 있었다. 10년 후 대략 2만 5,000개의 표제어가 수록된 출처 표시 목록이 33번째 책으로 출간되었고, 이로써 《독일어 사전》은 일시적이지만 끝을 맺게 되었다. [표 1]은 122년에 걸친 《독일어 사전》 편찬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Schares 2005:8).

## 2.4. 개정 작업

《독일어 사전》이 처음 출판되고 7년 뒤인 1861년 12월에 야코프 그림은 독문학자인 카를 바이간트가 수집한 용례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하고 정확한 용례들이 충심으로 필요합니다. 나중에 도착한 몇몇 용례 쪽지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인쇄된 사전을 한번 보신다면 추가분이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추가분의 특성에 따라 개정판에서 비로소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바이간트에게 보낸 그림의 1861년 12월 21일 자 편지, Briefe der Brüder Grimm an hessische Freunde, Gesammelt von E. Stengel, Marburg, Nr. 187, 1886:377).

《독일어 사전》은 초판 작업에서 독일어 어휘를 미지의 넓이와 역사적 깊이로까지 개척하였다. 그렇지만 1961년 사전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시점에서 보면 ‘A’부터 ‘Frucht’까지의 서술은 거의 100년 전의 상황을 표현한 낡은 것이었다. 역사적 사전에 대한 형식적인 요구와 변화된 내용의 수용에 대해 《독일어 사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 밖에도 표제어 수용의 완고함, 부족한 의미 세분화 내지는 표제어 서술 구조의 비통일성,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술 스타일 등이 개정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 외래어의 경시와 시대착오적 지식 수준 혹은 부족한 언어학적 보조 수단에 기인하는 부정확성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결국 각 표제어

집필 시점과 사용 시점의 시간상 간격의 결과로서 서술된 어휘의 용례에서 현재 상황과는 큰 갭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것이 앞서 발행된 부분의 사용을 제한하게 만들었다.

《독일어 사전》을 계속 학문적 토대로서 유지하기 위해 우선 그림 형제에 의해 집필된, 가장 오래된 부분인 'A'에서 'F'까지에 대한 개정이 1957년 결정되었다. 작업은 초판이 끝나자마자 시작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간된 책을 모델로 하지만, 짧게 압축하여 서술해야 했다.

1963년 야코프 그림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학술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계획된 개정을 위한 실험 표제어를 담은 소책자가 제시되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A'에서 'C'까지의 개정은 베를린 편찬소가 맡고, 'D'에서 'F'까지는 괴팅겐 편찬소가 맡기로 했다. 195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던 새롭고 광범위하며 균형 잡힌 어휘 아카이브를 위한 용례 수집은 위에 제시된 알파벳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동·서독 통일 후에 베를린 편찬소는 엄격한 콘셉트를 지니고 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효율적인 작업 조직, 추가 조사의 제한, 대표성이 있는 표제어만으로 감축, 역사와 용례의 집중적 서술 등을 위한 조치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가속화 조치 덕분에 베를린 편찬소는 원고 수합 양을 배가할 수 있었고 매년 처리되는 자료의 양과 작업 속도 역시 배로 늘릴 수 있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A'에서 'F'까지의 개정 작업은 76편의 원고를 담은 9권 분량의 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39편의 베를린 분책은 'A'에서 'C'까지 5권으로, 37편의 괴팅겐 분책은 'D'에서 'F'까지 4권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결하게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편집하는데도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250% 이상 그 내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어 사전》의 개정판은 1965년 이래 개별 분책 형태로 히르첼 출판사(Hirzel Verlag, [www.Hirzel.de](http://www.Hirzel.de))에서 출간되고 있다. 베를린과 괴팅겐 편찬소는 현재 매년 160단 분량의 분책을 완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정판 A에서 F까지로 계획된 개정판의 3분의 2 이상이 현재까지 출판되었다. 개정판의 베를린 분책들은 1993년 이래 디지털 형태([www.dwb.uni-trier.de](http://www.dwb.uni-trier.de))로도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도 베를린 용례 쪽지 아카이브의 자료들도 디지털로 바꾸어 보존될 것이다. 전자 표제어 목록과 연결되는 이런 디지털 용례 아카이브는 사전 서술에서 인쇄 매체나 간결하게 서술하는 원칙이 요구하는 제한 요소들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만들 것이다.

### 3. 《독일어 사전》의 콘셉트와 서술 대상

개정 1권의 머리말 시작 부분에 《독일어 사전》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림 형제의 기본 사고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출간된 권들과 연계된 개정판은 15세기 중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지 독일어 문어의 단어를 모든 언어적 일반 현상으로 가능한 한 완벽하게 기재하고 있다(《독일어 사전》 개정판 1권, ‘A’~‘AFFRIKATA’, Leipzig, 1983:3).

따라서 서술의 대상은 대략 서적 인쇄의 시작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각 권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어로 사용된 고지 독일어 어휘이다. 이것

은 전문어나 특수어 어휘 혹은 외국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인 일상적인 언어 사용으로 다소간 퍼졌거나 퍼지고 있는 단어들 포함한다. 《독일어 사전》은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추적하는 ‘용례 사전’이다. 즉, 처음부터 최근까지의 용례를 통해 단어 의미의 형성과 변화가 분석되며, 연대기적·체계적인 순서로 기록되고 설명되며 역사적 출처 텍스트에서 선별된 용례를 통해 그 의미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그 외에도 사전은 유래와 친척 관계에 있는 어휘, 다시 말해 어원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어휘의 근대 고지 독일어와 그 이전 단계의 정보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단어의 지역적 전파와 그 밖의 사용 유형 등을 용례 형태로 제공한다. 사전은 언어학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전 제작을 위한 기본 토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문헌학적이며 역사적인 분야에서 보다 넓은 사용자 그룹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베를린 편찬소의 용례 아카이브는 ‘A’에서 ‘Z’까지 전체 알파벳에 400만 개 이상의 용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00만 개가 알파벳 ‘A’에서 ‘C’까지의 영역이다. ‘D’에서 ‘F’까지를 소장하고 있는 괴팅겐 아카이브는 약 240만 개의 용례를 모아 놓고 있다. 그림 형제는 시작 단계에서 ‘A’에서 ‘Z’까지 약 60만 개의 용례를 수집했다. 초판의 1권에서 3권까지 출처 목록이 대략 1,600편의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면 새로운 베를린 용례 수집은 특히 15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4,000개 이상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 문학 이외에도 연대순의 텍스트, 법률 텍스트, 전단지, 신문, 편지, 일기, 실용서와 전문서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텍스트 종류의 넓은 스펙트럼도 보여 준다. 인용된 출처는 총 1만 개를 넘는다. 용례 쪽지 아카이브 외에도 최근에는 시디롬이나 온라인 디비상에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문치도 이용된다. 편찬소의 도



서관에는 발췌된 용례의 출처에 대한 검증을 위해 오리지널 텍스트가 비치되어 있다. 약 1만 4,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15세기에서 현재까지 모든 종류의 사전들이 있으며 작업 영역을 위한 광범위한 참고 서적도 비치해 놓고 있다.

#### 4. 《독일어 사전》의 수용과 반응

독일의 사전 편찬 역사에서 《독일어 사전》만큼이나 매스컴의 조명을 받은 사전은 없다. 《독일어 사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사전이 완성된 해인 1961년과 문고판이 나온 1984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언론인 에케하르트 벨리히가 사전 편찬 직원인 테오도르 콕스와 한스 노이만과 벌인 논쟁이 유명하다. 벨리히는 많은 기고문에서 《독일어 사전》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어 사전》에 기재된 용례의 출처를 밝힌 문헌들의 목록을 제시하며, 사전의 독일적·민족적 성향이 너무 지나치며, 반유대적 뉘앙스를 지니고, 사회주의나 좌파 자유주의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Boehlich 1961:43). 그는 또한 표제어, 특히 차용어와 외래어의 선택을 특정한 사전 편찬자 개인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K’를 작업한 힐데브란트의 경우 ‘Kanone(대포)’, ‘Kaserne(병영)’, ‘Kampanie(회사)’는 표제어로 선택된 반면, ‘Katastrophe(재앙)’, ‘Kausalität(인과 관계)’, ‘Kultur(문화)’는 선택되지 않았으며, 모리츠 하이네에 의해 편찬된 구간에는 ‘Literatur(문학)’, ‘Logik(논리학)’, ‘Methode(방법)’, ‘Metaphysik(형이상학)’ 등이 표제어에서 빠져 있다. 반면 나치 작가들의 용례가 포함된 표제어도 있으며, ‘Westen(서쪽)’과

‘westlich(서쪽의)’ 같은 표제어에는 일방적인 동독의 시각도 여과 없이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빌리히의 비판에 대해 콕스와 노이만은 사전이 학술적 기록 문헌을 원본 그대로 용례로서만 사용했다고 반박하며, 용례가 정치적 고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이만은 유대인으로서 나치로부터 받은 박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박은 한층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Neumann & Kochs 1961).

실제로 그림 형제는 당대 좌파 문학, 예를 들면 청년독일파에 속한 하이네, 뵘네, 라우베 등의 문학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전의 용례로 그들의 텍스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림 형제는 거부 이유로 ‘언어 위력(Sprachgewalt)’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용이나 정치적 동기가 분명히 개입되었을 것이다. 몇몇 반유대적 정보나 용례들이 반유대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을 때인 1900년경 저술된 《독일어 사전》의 분책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것도 《독일어 사전》이 지니고 있는 숙명적 단점이다.

## 5. 나오며

동베를린에서 베른하르트 베크만은 흥분한 상태에서 괴팅겐에 있는 동료 테오도르 콕스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친다.

오늘, 1961년 1월 10일, 화요일 정확히 17시에 최종 교정지가 인쇄  
소로 넘어갔습니다.

무려 122년에 걸친 《독일어 사전》이 완성되는 순간을 《슈피겔》은 위와 같이 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독일어 사전》의 편찬 작업은 그림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중국에는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나치 독재 시대, 동·서독 분단과 대결 구도 등의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며 결국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해에 완결되었다. 그런 만큼 《독일어 사전》은 시대의 사건과 유행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이 엄청난 작품이 지나는 많은 결점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Kultur(문화)’, ‘Logik(논리학)’, ‘Methode(방법)’ 등의 어휘는 그 사용 범위가 필수 어휘에 속할 정도이나, 《독일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이 모든 단점에도 그림 형제의 《독일어 사전》이 오늘날 독일어의 발전, 나아가서는 독일 민족의 통일과 정체성 확립에 일조한 공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 사전, 어원사전, 문체 사전 등 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들은 《독일어 사전》이란 위대한 작품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쉽게 나오긴 힘들었을 것이다. 용례 사전이 지닐 수밖에 없는 많은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사전》은 실로 독일 민족 언어생활의 산 증거이며 독일어의 보고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oehlich, W.(1961), Eine Pyrrhussieg der Germanistik. *Der Monat* 13/1960/61, Heft 154, 38~53.
- Freytag, G.(1902), *Briefe an Salomon Hirzel und die Seinen*. Mit einer Einleitung von A. Dove.
- Haß-Zumkehr, U.(2001), *Deutsche Wörterbuch - Brennpunkt von Sprach - und Kulturgeschichte*, Berlin/New York.
- Ippel, E.(Hrsg)(1886), *Briefwechsel zwischen Jacob und Wilhelm Grimm, Dahlmann und Gervinus*. Bd. 2, Berlin.
- Jacob und Wilhelm Grimm(1984), *Deutsches Wörterbuch*.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München(문고판 그림의 《독일어 사전》).
- Kirkness, A.(1980), *Geschichte des Deutschen Wörterbuchs. 1838 -1863. Dokumente zu den Lexikographen Grimm*. Mit einem Beitrag von Ludwig Denecke. Stuttgart.
- Neumann, H. & T. Kochs(1961), Religion -ja, Manöver -nicht, Das Deutsche Wörterbuch und seine Kritikaster, *Der Monat* 14/1961/62, Heft 158, 54~61.
- Schares, T.(2005), *Untersuchungen zu Anzahl, Umfang und Struktur der Artikel der Erstbearbeitung des Deutschen Wörterbuchs von Jacob Grimm und Wilhelm Grimm*, Dissertation Uni Trier.
- Schmidt, H.(1986), *Wörterbuchprobleme. Untersuchungen zu konzeptionellen Fragen der historischen Lexikographie*, Tübingen.

국어 산책

—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  
김정대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는 문법론을 전공했고, 지금은 방언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학 시절 내 첫 전공은 경영학이었다. 경제 호황기였던 1970년대 전반기 학번인 나는 잘나가는 경영학을 전공하여 큰돈을 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교양 국어 과목을 가르치던 어느 선생님의 꺾(?)에 빠져 국어국문학 쪽으로 전공을 옮기게 되었다.

나를 ‘전과자(轉科者)’로 만든 분은 잊을 수 없는 스승, 김영태(金永泰) 선생님이시다. 교양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소설 창작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경영학의 ‘경’자도 모르고 경영학과에 입학했던 나는 점점 경영학에 흥미를 잃어 가던 중이었다. 따라서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대안은 소설을 써서 성공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주위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전과의 길을 택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과 뒤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된 첫 과목은 기대한 ‘소설 창작론’이 아니라 예상도 하지 못한 ‘언어학 개론’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소설 창작과는 전혀 다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공시론과 통시론, 구조와 체계’ 등 언어학 관련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 운명

이라고 할 수밖에. 소설 창작에 대한 미련을 간직한 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의 마력에 빨려 들고 있었다. 통사론 관련 논문 30여편을 발표했을 무렵, 내 나이도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휴식의 필요성을 느낀 나는 학교에 연구년 신청을 했고, 2002학년도 1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 한글의 소중함, 전율로 다가오다

내가 첫발을 내디딘 언어학 이론은 촘스키의 변형 문법이었다. 당시 는 이 이론을 모르면 언어학자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였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촘스키 언어학은 이론 모형의 변화가 너무나 무쌍한 것이었다. 초기 이론, 표준 이론, 확대 표준 이론, 지배와 결속 이론, 장벽 이론, 최소주의 이론 등등은 ‘시골’에서 공부한 나에게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겨우 어떤 이론에 턱걸이하면 어느새 새 모형이 나와 저만치 앞서가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모진 마음을 먹고 ‘언어학의 본고장’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최신 촘스키 이론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욕망은 미국 도착 한 달이 안 돼 산산이 깨져 버렸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내가 머물던 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어느 여교수가 내게 물었다. 그는 한국 사람으로 촘스키 밑에서 학위를 받은 정통 촘스키 진영의 한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은 뭐 하러 미국에 오셨어요?” “최신 촘스키 언어 이론 공부를 좀 하려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츨스키가 사기를 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츨스키를 배우러 와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당찬(?) 목표를 접어야 했다. 첫 연구 주제가 사라지고 나니 이제 무엇을 연구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이 그 대학 도서관에 ‘숨어 있던’, 외국 학자들이 한글을 평가한 솔한 자료들이었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외국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한글을 평가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문 선생님이 쓰신 19세기 외국 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보아 온 터였고, 1985년 샘슨(Sampson) 교수가 한글을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문자인 ‘자질 문자’라고 평가한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학 소장 자료는 내게 관련된 지식이 너무 얕음을 조용히 나무라고 있었다. 자료를 보면서 나는 외국, 특히 서구 학자들이 한글을 평가한 것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8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글(언문)을 평가한 서구 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한글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 왔다. 하나는 한글이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우수한 문자라는 칭찬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한글도 어느 문자를 모방한 결과일 것이라는 선입견이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이런 관점이 이어졌는데, 나는 이 시기를 제1기라고 불렀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로, 이때에 이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되고 교재나 권위 있는 논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보 《훈민정음》이 발견되어 모방설 등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라이샤워·페어뱅크(Reischauer & Fairbank) 교수, 포스(Vos)와 맥콜리(McCawley) 교수, 그리고 레드야드(Ledyard) 교수가 이 시기 한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학자들이었음은 한국에도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저술 속에 한글을 재미있게 소개해 놓았다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제3기는 샘슨 교수가 자질 문자라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로 잡았다. 이 시기에는 자질 문자론 찬성론자뿐만 아니라 반대론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실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대학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는 ‘파월 북스’나 ‘아마존’을 통해서 사들였다. 보유 책자 100만 권을 자랑하는 ‘파월 북스’는 지상에 들어선 미국의 최대 서점으로 평가된 곳이었고, ‘아마존’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인터넷 서점이었다. 이 서점들에서 새로운 책을 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2003년 귀국한 뒤 나는 국어학회에서 이 논제로 발표를 했고, 발표한 원고를 가다듬어 《국어학》에 투고하여 게재하였다. 당시 내 발표를 들으시던 어느 선생님의 말씀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문자론 관련 자료를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김 선생 발표를 들어 보니 그게 아니구먼.”

## 방언의 조사·연구에 매달리다

이론 공부를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한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나의 연구년 시절. 이를 통해 나는 이론 지향적인 논문을 발표하곤 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때마침 국립국어원(당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역어 조사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며, 거기에 경상남도를 담당



해 달라고 내게 요청했던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찾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연구년 시절에 온몸으로 느낀 덕분이었다. 국어학의 위치에서 볼 때, 우리 것의 범주에 드는 것은 문헌 자료와 방언이 대표적이었다. 그 가운데 내가 택한 것은 방언 쪽이었다.

2003년 1년이 지역어 사업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기간이었다면, 2004년부터 2013년 10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지역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었다. 이 10년 동안을 나는 현장을 누비고 전사(轉寫)와 씨름하면서 보냈으니 나의 50대는 방언 사업과 함께했던 셈이다. ‘지역어조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 된 나는 방언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간간이 방언 관련 논문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방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논문을 쓸 만큼의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나 스스로 경남 방언 화자라는 점 덕분이었다.

내가 방언에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두 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분은 앞서 소개한 김영태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내 어머니이시다. 선생님은 이른 시기부터 방언학의 필요성을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방언학을 일궈 낸 학자의 한 분이시다. 내가 전과자가 되면서까지 선생님 밑으로 들어간 것에서부터, 방언에 대한 관심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만, 젊은 시절에는 ‘이론 공부’의 매력을 물리칠 수 없어 춤스키 타령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살아 있는 경남 방언 사전 그 자체이셨다. 어머니를 통해 많은 자료를 정리해 둘 수 있었던 것은, 돌이켜 생각하니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2007년에 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로, 나의 첫 방언 저술인 《경남

창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이 나왔다. 그때 서문의 끝에 나는 이렇게 적어 두 분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했다. “이 책을 필자의 두 분 ‘방언 스승님’께 바친다.”

나는 지금 경상남도의 후원으로 《경남 방언 사전》 편찬 작업에 여념이 없다. 몇 십 년 전부터 적어 두었던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 보면서 집필을 하는 요즘의 내 모습이야말로 나의 참모습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방언을 언제 접하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새 방언을 듣는 순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의 종류와 모습도 천차만별이었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손에 잡히는 종이 종류라는 종류는 다 ‘방언 자료 카드’가 되었으니 말이다. 면적이 넓은 흰 종이는 거의 찾을 수 없고 신문지 조각, 아이들 색종이, 편지 봉투, 수첩 내용 종이, 우편엽서, 심지어는 영수증까지 방언을 ‘보존하는 소중한 카드’로 활용되었다.

## 방언,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 줄이야

힘들여 가며 방언 사전을 편찬하는 까닭을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물음에는 한국에는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가 있고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오히려 ‘통일’된 언어생활을 해서 좋을 터인데,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정서도 다분히 깔려 있다. 방언의 필요성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을 위해 내가 준비해 둔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기로 한다. “세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 시대 가장 힘 있는 언어로 인식되는 영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언어는 모두 없애 버린다고 하면, 당신은 과연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가?” 한때 이상한 주장을 했던, 어느 정신 나간 소설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사람 모두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답할 것이다.

영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지,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한 데 있지는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되, 세계인들과 만났을 때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왜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국어가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모국어만큼 곡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사실 때문에 한 나라의 언어는 곧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모국어 외에 당대를 대표하는 세계어(영어) 하나 정도는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나 논의는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각 지역의 말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그 차이를 우리는 방언의 차이라고 한다. 이런 방언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것이 바로 ‘표준어’이다. 따라서 표준어에 대한 이해와 익히기는 필수이다. 그러나 아무리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해도 각 지역의 말, 즉 방언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은 표준어 또는 공통어의 뿌리가 되는 방언을 잘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은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국어를 잘 보존하는 일이라는 점과 바로 통한 것이다. 이제, 방언이 소중한 까닭을 정리해 보자.

방언은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어 주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 낯선 외국에서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부터 하듯이, 우리나라 안의 낯선 고장에서 같은 고향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역시 반가움이 앞선다.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도 내 고향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이것은 언어가 같은 겨레, 같은 고장 사람임을 확인해 주는 매개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명절과 같은 날, 고향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고향 말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더 정감이 가기 마련이다. 어쭙잖은 서울말을 썼다가는 대화 분위기를 망쳐 버리는 것은 물론, 정다운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까지 생기게 됨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다음 예를 보자.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한 대학생이 오랜만에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 동창의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부산말로 얘기를 걸어오는 그 친구에게 무엇에 홀렸는지 서울말로 대답하기 시작한다. 도중에 갑자기 말투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부산말과 서울말이 교차하는 둘 사이의 대화엔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그 친구에게 어설픈 서울 티를 낸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어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 정진웅(2004), 서울과 지방: 그 중심 지향의 문화를 넘어서, 《당대비평》 26, 생각의나무, 53쪽.

방언이 존재해야 할 둘째 중요성은 방언은 한국어 어휘를 다양하게 하고 폭넓게 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만으로는 우리말 모든 영역의 표현, 즉 농업·어업·광업 용어 등을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말의 맛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일찍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토속적인 정감이 있는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고, 북한에서도 중요한 방언을 모두 문화어(우리의 표준어에 해당)로 승격시킨 것을 참조할 일이다.

따라서 표준어에는 없고 (경남) 방언에 존재하는 ‘꼼밥(달걀의 한 부분만 깨고 자위를 빼낸 다음 거기에 쌀과 물을 적당히 넣고 구워서 익혀 만든 밥), 늑삼(주위의 관심에 편승한 과장된 행위), 비긋이(비를 막는데 사용되는 물건. 비막이), 모름(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나 의욕), 셋날지다(셋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끼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다), 마치 좋다(알맞을 정도로 좋다)’ 등등을 표준어로 사정한다면 우리말은 훨씬 더 감칠맛 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셋째, 방언은 국어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자들은 예외 없이 문헌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방언의 연구가 국어사 연구를 더욱 생생하게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 예를 제주도 방언에서 찾아보자. 15세기 중세 국어에는 ‘씩, 쫑, 쌀’ 등 ‘ㅅ’계 합용 병서로 표기된 예들이 많다.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 지역에서 각각 ‘떡, 똥, 딸’ 등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15세기 당시의 발음도 된소리였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중요한 한 주장이다. ‘ㅅ’계 합용 병서는 된소리 표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노인들이 ‘떡, 똥, 딸’을 ‘시떡, 시똥, 시딸년’으로 발음하고 있어, ‘ㅅ’계 합용 병서도 애초에는 된소리 표기가 아니라 제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두 자음군의 표기였음을 알게 해 준다.

이 밖에도 방언이 필요한 까닭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방언들을 모아 놓고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그런 인식은 국어 정책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도 방언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

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방언은 필요한 존재이다. 문학 작품이나 영화·연극 등의 배경이 지방일 때 그 지역의 말을 쓰면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 준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맺는 말: 한 우물 파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언 사전을 편찬하다 보면 방언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방언이 한국어(표준어) 어휘를 다양하게 하고, 폭넓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점은 바로 다양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표준어 ‘잠자리’에 해당하는 경남 방언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잠시 보자.

- (1) ‘철기’계: 철기, 털기, 처리, 철비, 철뱅이
- (2) ‘잘래비’계: 잘래비, 짤래비, 잘라래비, 짤라래비, 찰래비, 찰랑개비
- (3) ‘곰도리’계: 곰도리, 곰부리
- (4) ‘잠자리’계: 잠자리, 잔자리, 잠자루, 남자리, 깡자리
- (5) ‘행오리’계: 행오리, 앵오리
- (6) 그 밖: 안진뱅이, 필랑개비

모두 22개의 어형이 소개되었지만,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어형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어형들 하나하나가 그 생성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런 다양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언어(말)를 인류 최대의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언어(방언을 포함하여)가 어떤

한 언어로 통일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머리가 꼬덕여진다. 많은 언어가 영어 하나로 통일된다거나 한국어의 다양한 변종인 방언이 표준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어떻게 먹고사느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전과를 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국어국문학을 찾아한 우물만을 봤기 때문에 내게는 조금도 후회라는 것이 없다. 한 분야를 꾸준히 들여다보고 노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여 인문학 출신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정부가 늘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빠뜨릴 수 없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말, 우리글, 방언을 아끼고 연구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국립국어원 소식



##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프리퀄(prequel)의 다듬은 말: 전사편(前史篇)
- 러키 드로/럭키 드로우(lucky draw)의 다듬은 말: 행운권 추첨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의 다듬은 말: 열린 주민회의
- 네티켓(netiquette)의 다듬은 말: 누리꾼 예절

‘프리퀄’은 원작의 전사(前史, 이전의 역사, 이전 이야기)를 다른 작품으로, 넓게는 속편에 포함되는 작품을 이르는 외래어이다. ‘전사편(前史篇)’으로 다듬었다. ‘러키 드로/럭키 드로우’(규범에 맞는 표기는 ‘러키 드로’)는 행사장 등에서 번호표나 추첨권을 주고 무작위로 추첨하여 정해진 상품을 나눠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운권 추첨’으로 다듬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초대되어 관련된 공직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정책이나 화제가 되는 사안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회의를 말한다. 지역 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살려 ‘열린 주민회의’라고 다듬었다.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네티켓’은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로, ‘누리꾼 예절’로 다듬었다.

## 2.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고은)는 8월 14일(금)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그동안 남북 언어 연구와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뜻깊은 행사이다. 특히 초청 인사인 중국의 리싱젠(李行健) 선생이 중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중화어문대사전》<sup>1)</sup>의 편찬 과정과 성과에 대해 발표해 현재 남북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을 비롯한 남북 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졌다.

본 행사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권재일 교수(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비롯해 모두 7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재일동포의 언어 교육과 남북문제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재일동포 학자 조의성 교수(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의 발표와, 독일의 동서독 언어 통합 정책에 관한 최경은 교수(연세대학교)의 발표는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남북 언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

1) 2009년에 중국, 대만 양안은 '중화어문 기본서'를 편찬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에 《양안상용사전》을 출판했다. 현재는 여기에 표제어를 추가하여 약 13만~15만 표제어를 수록한 《중화어문대사전》을 공동 편찬하고 있다.

남북 언어 교류의 생생한 현장인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대표(김용태 에스케이패럴)로부터 남북 산업 교류 현장에서 통일된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밖에 북한 언어문화 전문가인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북한어 말뭉치 전문가인 소강춘 교수(전주대학교)의 발표도 앞으로 남북 언어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남북 언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3.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국립국어원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한 송철의 원장은 2015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 정제된 언어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혜택을 늘리는 ‘쉽고 편한 우리말 가꾸기’ 계획을 발표했다.

#### 3.1.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어 만들기에 주력

이번 발표회에서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3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한글 맞춤법〉(1988) 등 어문 규정이 고시된 후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규범과 현실 언어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문 규범을 유연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복수 표준어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해 연말에 발표한다. 또한 규범적 표현에서 변화된 현실의 표현 방식이나 신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사전 등에 정기적으로 반영한다. 최근에 ‘도긴개긴’ 등을 사전에 등재하고 ‘너무’의 긍정적 쓰임을 인정한 것도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국민의 현실 발음을 조사하여 발음이 혼란스러운 단어 등 현실 발음을 검토, 수용하고 어문 규범 개선을 위한 조사, 검토 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한편,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단 이후 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 언어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통일 후 언어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한민족 간의 언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언어 적응을 적극 지원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언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남북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교육 자료 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또한 남북 공동 국제 학술회의 정례화 등으로 남북 언어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및 분석, 남북 공동 순화 등 남북 언어 기초 자료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3.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 구축, 운영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은 개방성을 갖춘 국민 참여형 사전으로 2016년 10월 이후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사전은 신어 등을 국민의 참여 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한 우리말 지식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항목에 실생활 용어와 전문용어, 방언 등 50만 항목을 합해 100만 항목을 기본으로 구성했고,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 내용들에 대한 교정·교열과 감수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은 다변화된 사회에서 표준어 외에 다양한 실생활 언어 정보를 원하는 사전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도 함께 참여하여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다양한 표현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문 규범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의 콘텐츠는 위키 백과사전과 마찬가지로 자유 저작권 정책(CCL)을 채택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3.3.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강화

농인(청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환경 및 문화 향유 기반은 지체 장애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대표적 문화 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내용적 접근도 더욱 어렵다. 농인과 농인의 모어인 수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법안〉이 2013년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 문화 시설에 대한 농인(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인 공공 문화 시설인 박물관을 대상으로 주요 전시품에 대한 해설을 수어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동영상을 웹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우선 2015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2016년 이후에는 지방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자료 구축과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

에도 살아 있는 수어 자료인 한국 수어 말뭉치(코퍼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수어 웹사이트도 구축하여 농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에 대한 사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어, 점자 등 특수 언어에 대한 표준화, 정보화, 사전 구축,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 정비 등 다각도로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 인권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여 중장기 사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3.4. 우리말을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로 가꾸어 나갈 터**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알맞은 언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하면서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생활의 표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국어가 편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민족어 통합의 밑바탕을 다지는 한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통해 국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할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장애, 가난, 이민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세계인의 언어로서 한국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하였다.



#### 4.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실무소위’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2차 심의 확정안(2015. 5.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3차 심의 확정안(2015. 6. 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4차 심의 확정안(2015. 6. 12.)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5차 심의 확정안(2015. 6. 19.)
- 제121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6. 2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6차 심의 확정안(2015. 7. 1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7차 심의 확정안(2015. 7.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8차 심의 확정안(2015. 7. 3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9차 심의 확정안(2015. 8.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0차 심의 확정안(2015. 8. 14)

## 5. 국립국어원, 엔씨소프트문화재단과 업무 협약

국립국어원은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사장 윤송이)과 지난 8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에서 국어 관련 지식 정보에 대한 좀 더 편리한 접근과 활용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다양한 국어 지식 정보를 게임 등 최신 정보통신 기법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어 정책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주요 게임 회사가 만든 비영리 재단인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선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어문 규범 정보를 게임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재미있는 게임으로 어문 규범을 생활화하고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게임 이용의 결과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말 퀴즈 게임을 구축한 다음, 사용자들이 이 게임에서 퀴즈를 풀어 일정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달성 목표에 따라 재단에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의 공익 활동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게임의 주요 콘텐츠가 되는 국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게임 환경에 적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 기관) 국어 지식 정보 및 각종 관련 자료의 공유
- (엔씨소프트문화재단) 국어 지식 정보와 관련 자료의 가공, 보급
- (국립국어원) 국어 지식 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국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어 어문 규범과 게임 그리고 기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능성 게임 모델은 9월부터 본격적인 기획 및 개발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될 예정이다.

## 6. 2015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원 연수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 케이(The-K)호텔에서 '2015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귀화 준비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연수회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sup>2)</sup>을 운영하는

2)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 과정 및 한국 사회 이해 과정 이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이민자와 내국민 간 갈등을 방지하

한국어 교원 50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sup>3)</sup> 소속 한국어 교원 50명이 각각 참가했다.

### 6.1. 기관별 특성에 맞춘 참여형 한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 진행

개회식과 폐회식을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회는 기관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각 별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수회별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는 ‘언어권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교실 운영 방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한국어 교원 연수회는 ‘한국어 문법 교육 이론 및 실제’였다.

이번 연수회의 프로그램은 지난 연수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전문 강의·주제 특강·소그룹 주제별 분임 활동·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강의	특강 1: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론 특강 2: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대조언어학을 통한 한국어 발음의 이해 특강 3: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교사-학생 상호 작용 방안 강연: 이민 통합 정책의 이해
분임 활동	분임별 주제에 따른 교육 방안 개발 및 발표

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2009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다.

- 3)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국 217개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가족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그중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중도 입국 자녀에게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를 표준 교재로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내용
문고 답하기	한국어 교육 관련 전 영역 (사전에 질의 수합 후 선정된 질의에 한정해 답변하는 방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관람 및 체험 활동

[표 2]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강	특강 1: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유사 문법 교육 방법 특강 2: 한국어 문법 교육 자료(교재 및 부교재) 개발 및 활용 방법 특강 3: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강연: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 소개
분임 활동	분임별 주제에 따른 교육 방안 개발 및 수업 시연
문고 답하기	한국어 교육 관련 전 영역 (사전에 질의 수합 후 선정된 질의에 한정해 답변하는 방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관람 및 체험 활동

## 6.2. 한국어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한국어 교육 선도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의 자격 관리와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를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개발 뿐 아니라 다문화 시대의 언어 교육 정책 환경을 조사하고 수립하기 위한 교육 현장 조사,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원(재)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시대의 언어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7. 인사 이동

### 7.1. 임명

- 송철의(국립국어원장): 신규 임용(2015년 5월 26일~2018년 5월 25일)

### 7.2. 전보 발령

- 정창업(사무관): 교육연수과 → 국립중앙박물관(4월 27일)
- 이정희(행정주사보): 어문연구과 → 국립중앙박물관(4월 27일)
- 서광철(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실 → 교육연수과(4월 27일)
- 김경선(행정서기): 국립중앙극장 → 어문연구과(4월 27일)
- 정상만(행정주사): 기획운영과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7월 1일)
- 원경덕(행정주사): 국립중앙도서관 → 기획운영과(7월 1일)
- 이민서(사무운영서기):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교육연수과(7월 1일)
- 이운영(학예연구관): 어문연구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실(7월 27일)
- 강미영(학예연구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실 → 어문연구과(7월 27일)
- 이기연(학예연구사): 공공언어과 → 교육연수과(7월 27일)
- 이유원(학예연구사): 교육연수과 → 어문연구과(7월 27일)
- 김형배(학예연구사): 어문연구과 → 공공언어과(7월 27일)

### 7.3. 퇴직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임기 만료(4월 13일)
- 이경숙(사무운영주사보): 교육연수과 → 사무운영주사 승진, 명예 퇴직(6월 30일)
- 김세중(학예연구관): 어문연구과 → 명예퇴직(8월 31일)

